# INVENTION & PATENT

2011 November

11

발명특허

INVENTION & PATENT _ Vol . 424

## 제16대 한국발명진흥회
## 김광림 회장 취임

## [IP 이슈]
애플 컴퓨터 지식재산 분쟁의
어제와 오늘

## [시선집중]
'앱스토어'는
과연 애플만의 브랜드인가?

한국발명진흥회

# Contents

## IP Report


| | | |
|---|---|---|
| 14 | IP 리포트 | 한 · 미 상표법 체계 · 상표정책 및 상표권의 법적 성질 비교 |
| 19 | 포커스 | 미국 신규 특허법 소개 및 대응전략 |
| 24 | 표준특허&프랜드 | 표준특허와 프랜드?! |
| 29 | 표준특허&선언특허 | 특허풀의 표준특허와 표준화 기구의 선언특허 간의 상관관계 분석 |
| 36 | 특허확대경 | "우리은행"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표인가? |
| 40 | 여기서 잠깐 | 특허 Q&A |


## IP Column


| | | |
|---|---|---|
| 42 | IP 이슈 | 애플 컴퓨터 지식재산 분쟁의 어제와 오늘 |
| 50 | 시선집중 | '앱스토어'는 과연 애플만의 브랜드인가? |
| 54 | 특허&직무발명 | 특허분쟁과 직무발명보상제도 |
| 57 | Zoom In | 패션산업에서 단일 색체상표 가능할까? |
| 61 | IP 칼럼 | 생활 속에서 변화를 꿈꾸는 것이 발명의 시작이다 |
| 65 |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활용사례 | (주)코엔바이오 |


## IP Information

| | | |
|---|---|---|
| 70 | 세계는 지금 |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
| 73 | 10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 |
| 74 | KIPO NEWS | 특허청 소식 |
| 78 | KIPA NEWS |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 83 | 발명역사 속으로 | 콩테의 연필 |
| 84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 |
| 86 | 건강하게 삽시다 | 발이 건강해야 온 몸이 편안하다 |
| 89 | 독자마당 | QUIZ |
| 90 | 책과의 만남 | 손자병법 |
| 91 | 문화산책 | 김건모 데뷔 2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11 Vol. 424

**발행일** 2011년 11월호 제36권 제11호(통권424호)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_ 우 135-980) 02)3459-2800(代)
**발행인/편집인** 김 광 림 **편집위원** 유태수, 최화봉, 이태원, 황진원, 김규연 **인쇄인** 이평원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인쇄** 2011년 11월 7일
**발행** 2011년 11월 11일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한국전력의 스마트그리드가 $CO_2$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KEPCO

제16대 한국발명진흥회 신임회장 취임사

# 우리가 바로 **'지식강국 대한민국'**의 **주역**입니다

**김 광 림**
**한국발명진흥회 신임회장**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한국발명진흥회 제16대 회장으로 일하게 된 김광림(金光琳)입니다.

초대 주요한(朱耀翰) 회장님, 2대부터 6대까지 본회를 이끌어 오신 LG 구자경(具滋暻)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 그리고 15대 회장의 소임을 훌륭히 마무리하신 일진그룹 허진규(許鎭奎)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의 38년 발명역사를 함께 일구어 오신 회원여러분들과 150여 임직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회장직은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돌이켜보면, 제16대(2002.2.5-2003.3.3) 특허청장직을 마치고 재정경제부차관(2003.3.3-2005.6.1)으로 임명돼 가면서 "발명가족 한명이 다른 기관에서 발명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하는 당부말씀을 드린 이후 9년 만에 다시 發明立國 · 發明保國을 위해 발명가족의 한사람으로 돌아와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오늘, 발명인들과 발명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창의의 땀방울 덕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발명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건수가 세계5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규모(GDP) 대비 특허출원 건수, R&D 투자대비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특허 생산성은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특허등록 100만 건을 돌파하며 20세기에 특허제도를 도입한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00만 건 특허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특허심사 처리기간도 18개월로 단축돼 미국(25.7개월), 일본(28.7개월) 등 특허 선진국보다도 신속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식재산 기본법'이 7월 11일부터 시행돼 발명과 특허가 기술개발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도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해 업무를 시작하는 등 지식재산정책이 체계적인 국가 지식재산전략 아래에서 범국가적으로 통합추진 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청이 설립(1977년)되기 전에 한국특허협회(1973년)로 설립된 이후 국내 최초 · 최고의 지식재산권전문기관으로서 특허산업의 새 장을 개척해왔습니다.

2011년 현재, 특허기술 거래의 선도기관으로서 연구자와 기업 간 연계사업을 통해 개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정부연구소와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연간 150건 이상씩 기업으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정확성을 가진 특허기술자동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특허번호 입력만으로 기술의 시장성, 권리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 최대 지식재산 온라인(e-러닝) 교육포털을 운영, 100만 교육생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회는 대학교 특허교육 과정의 운영을 통해 작년을 기준으로 326명의 교수님과 8,316명의 학생들이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의 메카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발명진흥회 임직원 여러분!

삼성과 애플의 특허 · 디자인권에 대한 맞소송에서 보듯이 좋은 기술과 우수한 생산능력도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는 R&D가 '리스크와 위험이라는 뜻의 Risk and Danger'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Research와 Development를 뜻하는 R&D가 그야말로 보상과 기쁨을 의미하는 Reward와 Delight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한국발명진흥회의 새로운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수 특허를 보유한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해 '기술-특허-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의 우수한 특허권이 해외에서도 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출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야겠습니다.

1982년에 시작돼 올해로 30회를 맞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도 발명인 여러분의 축제의 장이 됨과 동시에 최고의 홍보 · 마케팅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면에서 과감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께서, 바로 우리가 '지식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는 주역이며, 첨단정예부대임을 잊지 맙시다.

인류 문명의 진보는 위대한 발명의 역사이며, 발명가족 여러분의 창의력이 세상을 바꾸는 원천임을 기억합시다.

한국발명진흥회가 걸어온 길 위에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오늘 하는 일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여는 일임을 확신합시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인재를 길러 내는,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전문기관으로 성장해나가는 한국발명진흥회를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매순간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발명진흥회

# 2011 직무발명 국제포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 · 벤처기업의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 · 일본 · 대만** 직무발명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3개국의 직무발명제도 우수 운영 기업을 초청, 사례 발표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1년 **11**월 **24**일(목) **14:00 ~ 17:0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 아나이스홀(12층)

**주최 :** 특허청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후원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일 정 | 구 분 | 세부 내용 | 비 고 |
|---|---|---|---|
| 14:00 ~ 14:02 | 도 입 | 주요 내외빈 소개 | 사회자 |
| 14:02 ~ 14:05 | | 환영사 | 한국발명 진흥회 |
| 14:05 ~ 14:20 | | 직무발명제도 우수기업 시상식 | 특허청 청장 |
| 14:20 ~ 14:25 | | 인사말씀 | |
| 14:25 ~ 14:40 | 국내 사례 |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제도운영 우수 사례 1 | 국내기업 A |
| 14:40 ~ 14:55 | |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제도운영 우수 사례 2 | 국내기업 B |
| 14:55 ~ 15:10 | | COFFEE BREAK | |
| 15:10 ~ 15:35 | 일본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및 기업의 운영 우수사례 | 일본 (중견기업) |
| 15:35 ~ 16:00 | 대만 사례 | 대만의 직무발명제도 및 기업의 운영 우수사례 | 대만 (중견기업) |
| 16:00 ~ 16:30 | 제도 개선 | 직무발명제도 확산을 위한 방안 | 전체토론 |
| 16:30 ~ 17:30 | 마무리 | 기념촬영 및 만찬 | 전 체 |

※ 행사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2793)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 글로벌IP 전략인재 양성과정]

# "일본 특허·상표 출원전략 및 특허소송" 특강 세미나

## 일본 현지 IP 전문가 직강을 통한 일본 IP 시장 완전 정복!!

실무경험이 풍부한 일본 현지 IP 전문가 직강을 통해,
일본 특허와 상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심도 있는 이해 가능!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착순 80명 마감)

### ○ 프로그램 개요

▶ 일　시 : 11월 21일(월) ~ 11월 22일(금) (2일 과정)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 교육 대상
- 기업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업무 종사자
- 일본 특허 출원 및 소송, 상표법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교육 인원 : 8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15만원**

**※ 조기신청자(11월 11일까지 등록자),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회원사, 동일기관(기업) 3인 이상 등록 시 10%할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지원 (*30,000원만 선납부)**
※ 1일차 중식 지원 포함

### ○ 프로그램 특징

-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최상위 랭크되어 있는 특허전문 로펌인 Finnegan & Henderson의 파트너 변호사와 Ohno & Partners 로펌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 초청강의
-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국 현지 IP 전문가 직강으로, 일본 특허·상표 출원절차 및 특허소송에 관하여 최신 정보와 심도 있는 이해 제공

**※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통역 제공**

### ○ 강사진

-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최상위 랭크되어 있는 특허전문 로펌인 Finnegan & Henderson의 파트너 변호사와 Ohno & Partners 로펌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

###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1. 10. 20(목) ~ 11. 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pid@kipa.org) 및 팩스(02-3459-2859)접수
* 신청 후 확인 전화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3459-2852,2806)
※ 세부 커리큘럼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pa.org)참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능력 실무이론 · 실전과정

## (기초 · 창출 · 보호 · 활용분야)

**○ 교육 목적**

- 지식재산 담당자라면 알아야할 기본이론과정 및 그에 따른 현장적용사례(문제)과정을 통하여 지식재산 기초능력을 확보하고, 현장적용전문성을 함양시킬수 있는 과정

**○ 교육운영방식**

· **과정명 및 교육일시**
- 지식재산능력 실무이론과정 : 11. 11(금)
- 지식재산능력 실전과정 : 11. 17(목)

· **교육 장소 :** 집체교육,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제1교육장

· **교육 대상 :** IP 관계자 및 관심있는 자 누구나

**○ 교육특징 및 프로그램(안)**

· 지식재산 기본이론 및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사례(문제) 풀이과정

· 지식재산능력함양과 동시에 **"지식재산능력시험"**을 동시에 준비할수 있는 과정

**○ 교육 프로그램**

| 구분 | 교육일시 | | 교육 프로그램(안) | 강사 |
|---|---|---|---|---|
| 실무 이론 과정 | 11. 11(금) | 08:30~09:00 | 수강생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진흥회 |
| | | 09:00~12:00 | 지식재산 기초분야(제도이해)<br>지식재산 창출분야(특허검색, 출원) | 지심 IP & Company<br>배경용 변리사 |
| | | 12:00~13:00 | 중식 | - |
| | | 13:00~17:00 | 지식재산 보호분야(심판, 침해)<br>지식재산 활용분야(평가, 라이센싱) | 다나특허<br>진희동 변리사 |
| 실전 과정 | 11. 17(수) | 13:30~14:00 | 수강생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진흥회 |
| | | 14:00~18:00 | 기초이론<br>지식재산 기초분야(제도) 핵심문제 풀이<br>지식재산 기초분야(제도) 핵심문제 풀이<br>지식재산 보호분야(심판, 침해) 핵심문제 풀이<br>지식재산 활용분야(평가, 라이센싱) 핵심문제 풀이 | 안앤박국제<br>특허법률사무소<br>박종태 변리사 |

※ 강의운영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 세부프로그램은 www.ipa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및 혜택사항**

· 2개 강좌 신청시 : 수강료 할인 (약 22%) / · 단체접수시 : 수강료 추가할인 (약 10%)

· 오프라인교육 수강자에 한하여 응시료 할인 (20,000원→18,000원)
- 교육신청란에 응시여부 표기 한자에 한하여 단체 인증키 발행해드립니다.
- 기응시료 결재 하신분의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교육신청 및 시험응시생에 한하여 5만원 상당의 온라인 강의 무료제공 (응시 확인후)

· 실무이론과정은 2만원 상당 교재제공, 실전과정은 요약자료제공

| 항목 | 실무이론과정 | 실전과정 | 동시수강 신청 |
|---|---|---|---|
| 기본수강료 | 120,000원 | 60,000원 | 14만원 |
| 단체 | 108,000원 | 54,000만원 | 126만원 |
| 오프라인교육수강<br>및 응시생 온라인강좌 | 5만원 온라인강좌<br>무료제공 | 5만원 온라인강좌<br>무료제공 | 5만원 온라인강좌<br>무료제공 |
| 2만원 상당 교재제공 | 교재제공 | 별도 인쇄물 배포 | 교재제공 |
| 시험응시료 | 18,000원 | 18,000원 | 18,000원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특허정보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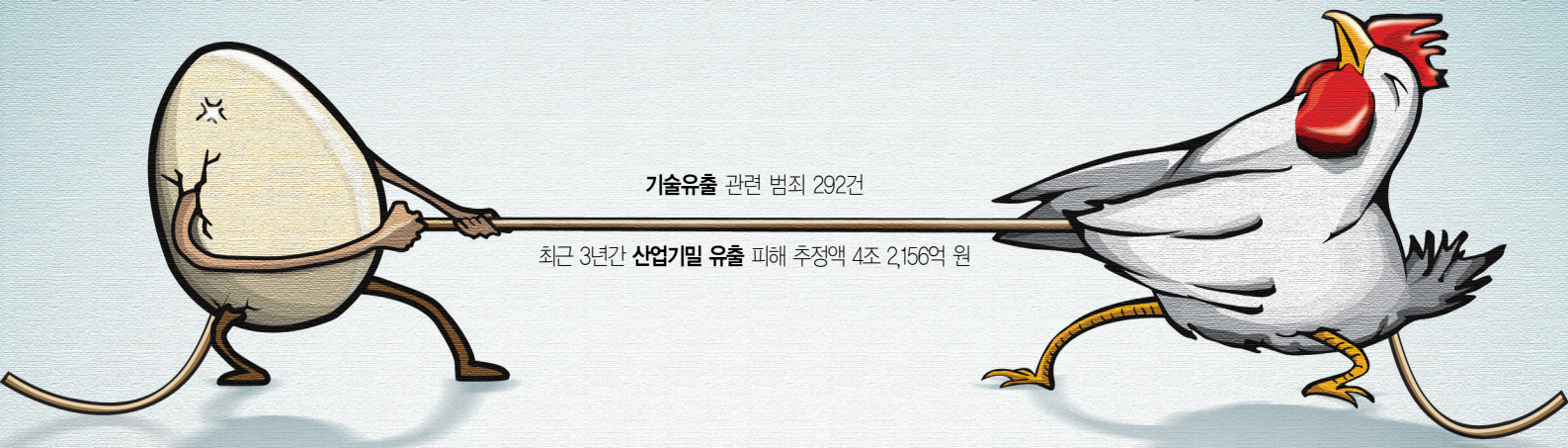


# 아직까지 분쟁 중?

이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도용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의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
-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전자파일을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활용대상**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 노하우, 조리법 등 **원본 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한국특허정보원 이용문의 전화 : 02)6915-6541 | 대표팩스 : 02)6915-6510 | E-mail : tsecret@kipi.or.kr

2011 제9회

# 여성발명경진대회

## 2011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여성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뛰어난 여성발명(기업)인을 발굴, 홍보하기 위한
「제9회 여성발명경진대회」와 「2011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의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실용적인 생활발명품의 산실이 되어 온 「여성발명경진대회」와
발명으로 사업의 성공한 여성들의 모범을 제시할
「2011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에 오셔서
여성들의 섬세하고 창조적인 발명아이디어를 만나보세요.

**일시** : 2011년 11월 10일(목) 13:00~14:30

**장소** : 서울 포스틸타워 3층 이벤트홀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

**문의**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전화** 02-538-2710 **이메일** kwia@inventor.or.kr

**주최**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관** : 한국여성발명협회 KOREA WOMEN INVENTORS ASSOCIATION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 제9회 발명장학생 선발캠프 안내

## 발명장학생 선발

■ **목적**

- 우수 발명활동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발명인재의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

## 선발캠프 개요

■ **목적**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여 학생의 협동성 및 발명활동 의지를 평가하여 최종 100명 선발

■ **일시 : 2011. 11. 11(금)~13(일)**

■ **장소 : 리솜스파캐슬 덕산(충남 예산)**

■ **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학생 206명(초82, 중63, 고61)

■ **평가항목**

- 팀 프로젝트(70점) : 문제인식, 창의력, 사회성 등
- 개별면접(30점) : 발명활동 의지, 진정성 등

## 선발캠프 일정

<table>
<tr><th rowspan="2">시간</th><th colspan="3">1일차(11/11)</th><th colspan="3">2일차(11/12)</th><th colspan="3">3일차(11/13)</th></tr>
<tr><th>초등학교</th><th>중학교</th><th>고등학교</th><th>초등학교</th><th>중학교</th><th>고등학교</th><th>초등학교</th><th>중학교</th><th>고등학교</th></tr>
<tr><td>07:00~08:00</td><td colspan="3" rowspan="5">(이동)</td><td colspan="3">기상 및 세면</td><td colspan="3">기상 및 세면</td></tr>
<tr><td>08:00~09:00</td><td colspan="3">아침 식사</td><td colspan="3">아침 식사</td></tr>
<tr><td>09:00~10:00</td><td colspan="3" rowspan="3">우리가 꿈꾸는 미래</td><td colspan="3" rowspan="3">블록을 사용한 팀 활동</td></tr>
<tr><td>10:00~11:00</td></tr>
<tr><td>11:00~12:00</td></tr>
<tr><td>12:00~13:00</td><td colspan="3">점심 식사</td><td colspan="3">점심 식사</td><td colspan="3">폐회식(점심식사)</td></tr>
<tr><td>13:00~14:00</td><td colspan="3">개회 및 캠프안내</td><td colspan="3" rowspan="4">우리가 꿈꾸는 미래</td><td colspan="3" rowspan="9">(이동)</td></tr>
<tr><td>14:00~15:00</td><td colspan="3" rowspan="2">발명선배와의 만남</td></tr>
<tr><td>15:00~15:30</td></tr>
<tr><td>15:40~17:00</td><td colspan="3" rowspan="2">성격검사</td></tr>
<tr><td>17:00~18:00</td></tr>
<tr><td>18:00~19:00</td><td colspan="3">저녁식사</td><td colspan="3">저녁식사</td></tr>
<tr><td>19:00~20:00</td><td colspan="3" rowspan="3">팀 구성 및 팀워크 활동</td><td colspan="3" rowspan="3">미술속의 발명활동</td></tr>
<tr><td>20:00~21:00</td></tr>
<tr><td>21:00~22:00</td></tr>
<tr><td>22:00</td><td colspan="3">취침</td><td colspan="3">취침</td></tr>
</table>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볏짚표면 호안,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 보유기술및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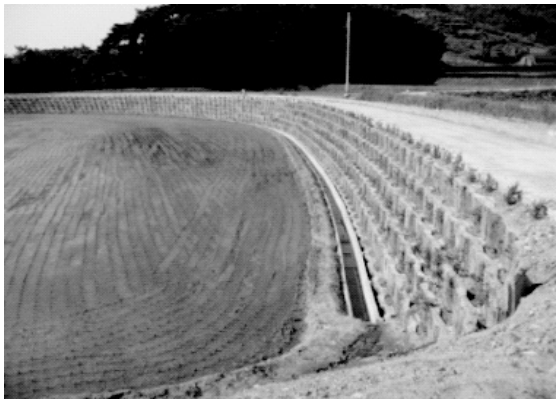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볏짚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11건
- ⊙ 실용신안: 볏짚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가로수보호의자외3건)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 Nuriplan

Company Making The World Beautiful

2009년 6월1일 GD마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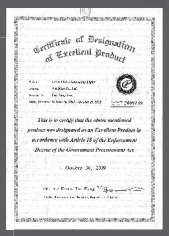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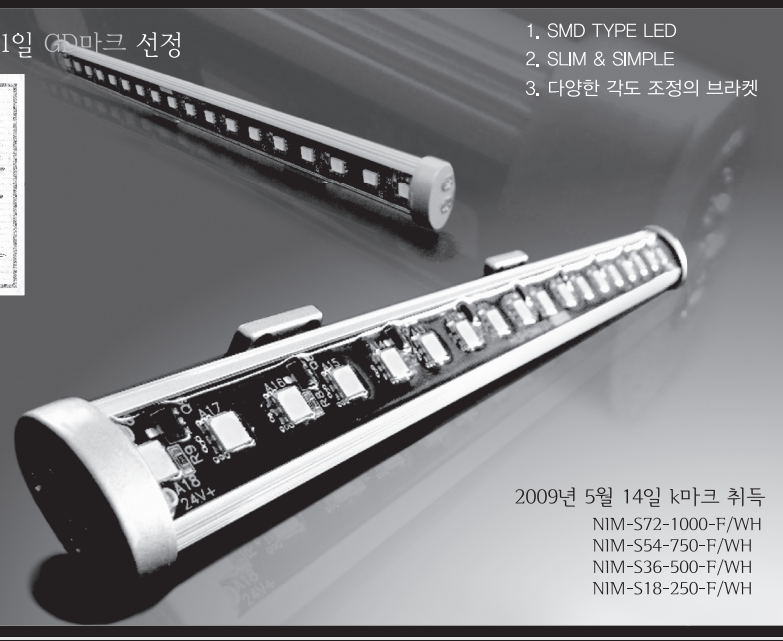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NIM-S72-1000-F/WH
NIM-S54-750-F/WH
NIM-S36-500-F/WH
NIM-S18-250-F/WH

아름다운 빛의 근원

## SLIM LINE LED

• 설치시공사례

중교

대흥교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LED 조명등(NIM-CS1.5W-A)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뿌리공원

남지대교

##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강남 자원회수시설

천호 지하 주차장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 ECO FRIEND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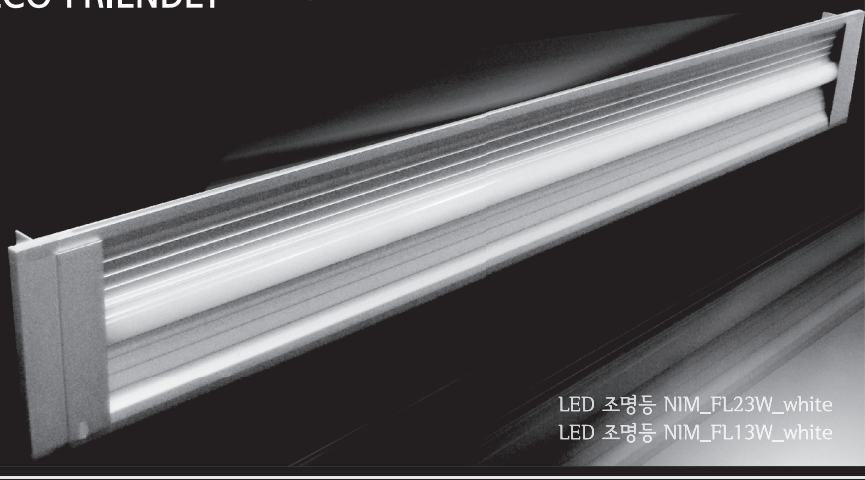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www.nuriplan.com
(137-84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8-34 누리플랜 B/D
TEL) 02.2679.4100 FAX) 02.3660.4276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 IP

IP 리포트

한 · 미 상표법 체계 · 상표정책 및 상표권의 법적 성질 비교

포커스

미국 신규 특허법 소개 및 대응전략

표준특허&프랜드

표준특허와 프랜드?!

표준특허&선언특허

특허풀의 표준특허와 표준화 기구의 선언특허 간의 상관관계 분석

특허확대경

"우리은행"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표인가?

# Report

# 한 · 미 상표법 체계(Juris-prudence) · 상표정책 및 상표권의 법적 성질 비교

미국은 관습법(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보통법(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의 기반 없이 정부주도로 바람직한 현상(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토대)으로서의 법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Continental law) 체계라는 법철학적 차이점이 있다.

**김 동 욱**
특허청 고객협력국 출원과장

2007년 한 · 미 FTA 협상 당시 미 대표단은 우리 정부에 상표권 침해범위를 유사 상품(similar goods)에서 자국의 침해 범위에 속하는 관련 상품(related goods)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대표단은 서로 다른 법체계의 서로 다른 기준을 도입 ·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우리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identical or similar) 상품의 침해 범위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으로 여겨졌던 '관련 상품(related goods)' 까지 확대해줄 것을 미국 측은 강력히 요청하였지만, 이미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대륙법 체계 내에 영미법적 기준을 도입할 경우 상표 침해범위 및 관행에 막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1] 따라서 양국 상표법 체계와 상표정책 및 상표권의 법적 성질 등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상표제도 간 조화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상표법 체계 비교

### 미국 상표법 체계(Juris-Prudence)

보통법 체계(Common Law Systems)로서 미국 Lanham법[2]은 제정 당시 합법적인 상거래 관행(legitimate business practices)을 조문화한 것이다. 랜햄법 제정 이후 1962년, 1988년[3] 등 주요 상표법 개정 역시 이미 판례에서

나왔던 이론들을 성문화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여 그로부터 법적 합리성(rationale)이 판결에 의해 도출되어 성문법이 제정되게 된다. 즉, 판결을 통해 법리가 출현하고 이러한 판례의 주된 변화가 랜햄법 제정 또는 이후의 1962년, 1988년 상표법 개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 특유의 선사용주의 제도를 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미국 상표법은 상표권 취득의 근거를 상거래에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use in commerce)한 "사실"에 기초를 둔다. 선사용주의(first-to-use)로 대변되는 이 제도는, 정부기관에 "등록"한 사실이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상거래에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상표권 인정의 근본적 정당성을 두는 것이다. 비록 1988년 상표법 개정에서 출원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출원 · 등록이 가능한 제도(ITU, Intent-To-Use)를 도입하였지만, 출원 이후 상표를 실제 사용하여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상표사용 증거자료를 6개월씩 수차례 연장 가능하지만, 종국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 출원이 무효로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사용주의의 근본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ITU 제도는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등록 후 5년간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특별한 다툼이 없는 한, 더 이상 상표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不可爭의 권리(in-contestibility)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선출원주의 제도(first-to-file system)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상표등록이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선사용주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 한국 상표법 체계

우리 상표법은 공권력의 정책적 표현인 법이 바람직한 현실을 조성하고 지도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조성하는 대륙법 체계(civil law system)에 속한다. 일찍 산업혁명을 시작하여 발전된 영미 경제사회 현실에 뒤떨어진 후발국으로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위한, Top-Down 방식의 대륙법적 법체계(jurisprudence) 및 문화가 형성되었다.[4] 이러한 법 체제는 즉 법규범이 시민사회를 조성하고, 현실의 경험을 규제하는 권위주의 체제(authoritative system)로부터 비롯되었다. 강제규범으로서 법이 저개발된 경제사회 현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선도하기 위해 공권력인 법을 정책수단으로 삼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제도를 보면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 즉, 누구든지 실제 상거래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되면 권리를 선점할 수 있다. 상표의 실제 사용 사실에 권리존재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기관에 출원한 행위가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관심의 초점이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 상표 출원과 공권력 집행기관으로서 특허청의 등록행위에 있는 것이다. 출원인의 출원이라는 행위가

1) Trademark Policy Agenda Reflecting the Korean and American FTA Negotiation Results in 2007, KIPO, 2008, 5-6면.
2) 미국 상표법은 1870년 최초로 특허와 저작권에 관한 헌법조항(Article 1 §8 clause 8)을 근거로 절차법에 관하여 제정되었으나, 1979년 연방대법원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의회가 상표법을 제정한 것은 지적인 창작으로서의 특허와 저작권과는 관련이 없음에도(법안 명칭이 "An Act to revise, consolidate and amend the statutes relating to patents and copyrights.") 이를 근거로 상표법을 제정한 것은 의회의 월권이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1881년 새롭게 상표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부적합한 법이었다. 1905년 근대적인 연방 상표등록법을 제정하였으나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미흡하고 오직 순수한 조어표장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표장은 등록이 불가능한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이후 수차례 연속 수정과 개정을 거듭하다 1920년 새로운 법 개정을 하였지만 여전히 상거래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부적합 점이 너무 많았다. Beverly W. Pattishall, "The Lanham Trademark Act & Its Impact over Four Decades, 193 TMR 193, 194, (1986); J. Thomas McCarthy.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1st ed)」, 1973, §5:3-5:4.
3) 랜햄법 제정 이래 가장 많은 법개정을 한 1988년 개정은 '표장의 국제등록절차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부응하여 미국내 상표출원자의 선사용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선출원주의 등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4) Jong-Kyun Woo, "The Trademark Use Require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sights from Domain Name Disputes and Prospects for Harmoniz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2002, pp. 1-2.

기초행위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권한 부여에 의해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구제의 목적보다는 상표권의 보호를 통한 경제개발을 위해 디자인되었고 도입되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국가적 경제개발을 위한 효과적 개발체제로서 중앙집권적인 법률체계를 만들 강력한 필요가 있었고 선출원주의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독일과 일본의 법체계 및 경제개발 사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5]

### 양국 상표법 체계 비교

미국은 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로 관습법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기초로 시민사회의 기반이 없이 정부주도의 산업발전을 위해 위로부터 법규범을 형성, 주도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 체계라고 할 것이다. 즉, 미국은 합법적 상거래 관행을 성문화하는 시장현실의 합리적 관행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문화로서, 상표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실이 상표권 창출을 정당화하는 반면, 우리는 – 비록 출원인의 출원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지만 – 위로부터 정부의 권리 부여로 상표권이 창출된다. 그 이유는 상표법을 통해 바람직한 상거래 관행을 조성,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때문이라 할 것이다.[6]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개념적인 것으로, 산업화에 따른 상거래 양식이 동질화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법조약 등 상표법의 국제화에 의해 그 차이점이 점점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 상표정책 비교

### 미국 상표정책의 목적

미 상표정책의 목적은 랜햄법 제정 당시 연방 상원 의원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7]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와 소비자의 혼동방지라는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래 미국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당시, 위 두 가지 목적은 서로 융화되지 않는 심한 이견과 대립을 보여 왔다.[8]

맥키나 교수는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상표보호 목적을 상표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첫째 목적을 두었으며, 소비자 혼동방지는 2차적인 목표 혹은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증거가 되는 보조적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하였는데[9] 맥카시 교수 등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목표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표정책은 상표의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시카고 학파에 의해 소비자 권리에 보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여 소비자의 혼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상표권 보호의 본연의 목적임을 중시하면서, 상표의 규범적이고 법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기능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가 상표법의 실질적 목적으로 부각되면서, 역설적으로 이에 비례해서 상표권자의 권리도 소비자 보호를 지렛대로 하여 비례해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상표정책의 목적

우리 상표법은 제1조에서 소비자 이익(interest of consumer) 보호를 생산자 보호 및 산업발전과 동일하게 상표보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0] 상표법 제정 이후 산업발전을 위한 상표권자의 보호에 상대적 비중을 더 두

던 것에서 1980년대 이후 시장경제 및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점차적으로 중시함으로써 양자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 양국 상표정책 비교

우리 상표법은 제1조 법 제정 목적 중 하나로서 산업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러한 법규정 없이 판례와 문헌[11]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free and fair competition)을 기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소 양국이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륙법 체계는 개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법 목적과 전체 조문의 통합적 해석을 중시하고, 이러한 해석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므로 1949년 제정된 상표 보호 목적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발전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점과, 한 · 미 양국 모두 소비자와 상표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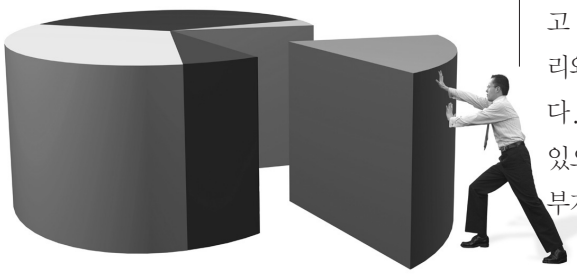

## 상표권의 보호적격 (Protectibility)

### 출원 및 등록의 법적성질

미국은 상표 사용이라는 사실이 상표권을 창출하며 등록은 이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비록 선출원제도(ITU Intent To Use)를 도입하였지만 이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은 상표의 실제 사용과는 관계없이 출원을 기초로 정부기관의 등록행위에 의해 상표권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 상표법 제41조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점을 잘 보여준다.[12]

### 등록효력의 정당성 및 관할권

미국 민사법원은 특허의 경우와 달리 상표청의 상표 등록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직접 무효시킬 수 있다. 미 상표심판원(TTAB) Albert Zervas 심판관은 민사법원이 더 많은 증거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기관이 다름에도 민사법원 판사의 특허상표청 등록상표 취소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우리와 법인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한국은 관할권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상표의 효력 여부가 본안사건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상표등록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사법원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특허의 무효항변이론과 유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5) Jong-Kyun Woo, 위의 논문, pp. 3-5.
6) 이 점은 미 특허상표청에 상표 등록 없이도 랜햄법 제43조의 부정경쟁방지 조항을 근거로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 주장이 등록에 의한 상표권 침해 주장보다 증거제시 등에서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 대다수 상표가 등록되고 있다.
7) 랜햄법 제정 당시 미 의회보고서는 "to protect the public so that it may be confident that, in purchasing a product bearing a particular trademark, and to ensure that where the trademark owner has invested energy, time and money in presenting to the public, he is protected in his investment from its appropriation by cheats."라고 하여 상표보호 목적이 소비자와 상표권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S. Rep. No. 1333, 79th Cong., 2d Sess. 3, 1946.
8) J. Thomas McCarthy,「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4th ed)」, 2010, §24:55-60.
9) Mark P. McKenna,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rademark Law," Norte Dame Law Review, 82 Vol. 1839, 2007, 1839-1843; McCarthy, 앞의 책 8, §2:1;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 : Cases and Comments (6th ed.)」, 2002, pp. 66-68.
10) McKenna 교수에 의하면 "상표법은" 21세기 이르러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법은 정부정책의 공식적 표명이다. McKenna, 위의 논문, p. 1843.
11) Maggs & Schechter 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산업발전과 후생복지를 극대화한다는 공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Robert B. Maggs and Roger E. Schechter,「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 cases and comments(6th ed)」, 2002, pp. 32-33.
12) 한국이나 미국 모두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출원서에 "기술된 것"을 기초로 심사를 하게 된다. 미국 상표심판원은 이의신청 혹은 취소심판절차에서 등록적격을 판단할 때 등록서류에 기술된 것을 기초로 등록적격성을 판단하며 상표가 사용되는 구체적 시장 환경을 심판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은 동 주장이 등록서류에 기재되지 않는 한 고려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 현실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균적인 소비자, 상품, 유통경로를 추정하여 판단한다.
13) 이와관련 2009. 7. 27일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워싱턴 주재 특허관의 협조로 USPTO 상표심사과 과장(manager)과 상표심판원(TTAB) Albert Zervas 심판관(administrative trademark judge, albert.zervas@uspto.gov)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 등록적격성(Registrability)과 침해요건

한국의 경우 등록이 침해성립의 전제조건이 되는 반면, 미국은 상거래 사용(use in commerce) 여부가 상표 침해성립의 전통적인 전제조건이었으나, 1988년 사용을 전제로 한 출원제도(Intent-To-Use, ITU), 즉 변형된 선출원주의 도입 이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등록으로 침해성립의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 결어

법미국의 보통법 체계(Common Law System)와 우리 대륙법 체계(Civil Law System)는 외견상 상이함이 큰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된 상거래 양식이 동질화되고, 법제정과 적용은 근본적으로 법 환경으로서 경제구조 및 문화적 삶의 양식의 반영이라는 점, 규범과 현실의 지속적 상호작용에 따른 법체계의 동질화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법조약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법의 국제화 등에 의해 양국간 차이점이 유명무실해지며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Beverly W. Pattishall, "The Lanham Trademark Act & Its Impact over Four Decades," 193 TMR 193, 218, 1986.
- Graeme B. Dinwoodie & Mark D. Janis,「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 : Cases and Comments (6th ed.)」, 2002.
- J. Thomas McCarthy,「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4th ed., 2010.
- Korea Patent and Trademark Office,「Analysis and issues of the United States trademark law and system」, Dae-Jeon : KIPO.2006.
- Mark P. McKenna,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rademark Law," Norte Dame Law Review, 82 Vol. 1839, 2007.
- Robert B. Maggs and Roger E. Schechter,「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aw : cases and comments(6th ed)」, 2002.
- Jong-Kyun Woo, "The Trademark Use Require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sights from Domain Name Disputes and Prospects for Harmoniz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2000.


2011. 11

# 미국 신규 특허법 소개 및 대응전략
## (America Invents Act of 2011)

함 윤 석[1)]

양당 간의 Leahy-Smith 2011미국 발명 법안이 2011년 9월 8일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 특허법으로 정식 승인되었다. 이 법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방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특허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의 대상을 최초 발명자(First to Invent)로부터 최초 출원자로(First to File)로 변경시키는 근원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기에, 미국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우선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Prioritized Examin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특허수속이 가능토록 하여 발명품들이 조기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특허청의 심사지체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으로 미국 특허청이 수수료를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충분한 심사인력을 수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소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특허청 내에서의 Post Grant Review, Inter Partes Review 등의 제도를 신설해, 더 많은 특허관련 분쟁이 법원에서 보다 특허청 내에서 다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특허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즉, Third Party Submission, Supplemental Examination, Derivation Proceeding 등을 통해 특허권의 질을 높여 더욱 투명한 특허권리가 결정되

1) 함윤석은 미국특허청이 소재한 Virginia주의 지적재산권 전문 Law Firm인 Lowe Hauptman Ham & Berner, LLP의 대표변호사로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출원, 라이센싱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는 Franklin Pierce Law School에서 Juris Doctor와 지적재산권 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에서 전기공학석사와 전공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본 기고에 대한 문의는 yham@ipfirm.com 또는 Tel: 1-703-535-734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전체적으로 수십 개 이상의 조항이 신규로 제정되었거나 혹은 기존 조항에 수정이 가해졌기에 이해하기에 난해한 점이 많아, Prosecution Stage, Post Grant Stage, 그리고 Litigation Stage로 나누고, 각 Stage에 해당되는 중요한 법조항들을 소개하므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울러, 이후에서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미국 특허법에 비춘 특허전략을 소개하므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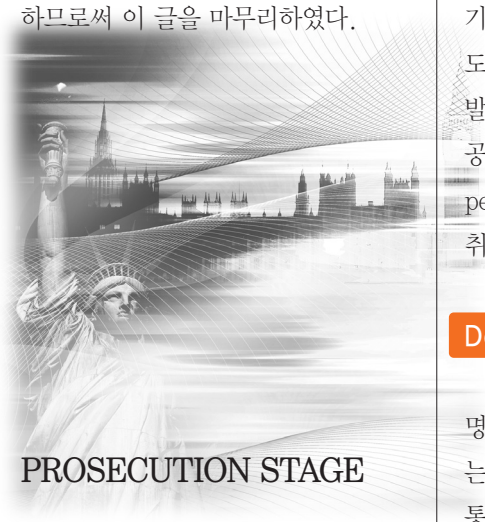

## PROSECUTION STAGE

### First to File

오늘날까지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 First to Invent 정책에 기초해 왔다. 이는 발명을 착상하고 실현한 최초의 발명자에게 미 특허 보호와 우선권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타 국가들은 최초로 발명하거나 실행한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특허 출원을 가장 먼저 한 사람 (First to File제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실, 이 법은 First Inventor to File 표준을 채택하면서 국제적 기준과 미국 기준의 조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발명자로서 아울러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즉, 같은 발명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출원자가 있고, 선출원자의 발명이 후출원자의 발명으로부터 기인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해 선발명자(후출원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기 때문에, First Inventor to File 제도로 명명한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은 발명자 스스로가 출원이전에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도 1년간의 grace period를 제공하여 여전히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Derivation Proceedings

선발명자는 제 3자의 출원이 선발명자의 발명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믿는 경우,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해 3자의 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Interference Proceedings을 대체하는 것으로써 2013년 3월 16일부터 유효하다.

### Non Patentable Subject Matter

동 법은 다음의 두가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가능 대상 (Patentable Subject Matter[2])에서 제외시켰다.

- 세금 전략에 관한 특허 금지 : 세금 부담의 감면, 회피, 또는 연기를 위한, 세금 전략에 관한 발명은 특허가 될 수 없다. (약간의 예외사항이 있음)
- 인체에 관련된 특허 금지 : 인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법안은 예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Pre-Issuance Thrid Party Submissions

특허출원이 공개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거절이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그리고 아직 그 출원에 대해 Notice of Allowance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제3자가 그 특허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Micro entity Status

신청자 중 새로운 "micro entity" 등급이 정립되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미 특허청 수수료가 75%까지 대폭 감면될 것이다. (고등 교육기관의 공공기관 발명가들이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임.)

### Prioritized Examination

이 법은 신청자가 $4,800의 수수료를 지불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동 조항은 국가 경제 또는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제품, 절차 또는 기술들에 관한 신청의 심사를 우선시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미 특허청에 요구하고 있다.

## POST GRANT STAGE

### Post-Grant Review

법 시행 1년 이후, 제 3자는 특허 등록 이후 9개월 안에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도전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자에 의해 제시된 정보가 적어도 한 청구항이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미 특허청이 Post-Grant Review를 승인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는 제한된 근거에 바탕을 둔 Reexamination 혹은 후술하는 Inter Partes Review와 달리, 어떤 근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원자가 이Review 동안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추후의 소송 시에 제기될 수 없다.

### Inter Partes Review

Ex Parte Reexamination 절차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며, Inter Partes Reexamination은 Inter Partes Review로 대체될 것이고, 이 절차는 Post Grant Review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 Inter Partes Review는 Inter Partes Reexamination과 여러모로 비슷하나, 다만 Inter Partes Reexamination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인 "제기된 선행기술이 해당 특허의 특허성에 상당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음 (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보다 다소 높은 기준인 "최소한 한 청구항을 무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on at least one claim)" 을 만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Transitional Business Method Review

동 법은 영업 방법 관련 특허 침해한 것으로 피소된 당사자들이 미국 특허청으로 하여금 특허를 재검토해 줄 것을 청원하는 시한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검토는 금융 제품의 운영에 있어 데이타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것과 직결된 특허와 관련하여 소송당한 금융 서비스 기업들에만 적용된다. 청원자는 제한된 특정유형의 선행기술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에서 이미 사용된 선행기술을 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영업 방법 검토 프로그램은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나면 만료하게 된다.

### Supplemental Examination

특허권자는 발행된 특허에 대해 Supplemental Examination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동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한 이 절차는, 특허출원 수속 절차 중에 발생된 실수를 수정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미 특허청에 Pre-litigation submission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이 절차에서 특허권자가 공개한 증거물들은, 추후 소송에서 inequitable conduct의 증거로서 주장될 수 없다.

## LITIGATION STAGE

### False Marking Cases

이 조항은 false marking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경제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로 제한함으로써, false marking 법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 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법률 제정 이후 보류되어 있는 수백 개의 소송들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적용될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최근 기업들과 법원에 퍼져가고 있는 막대한 수의 false marking 소송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2) 35 U.S.C. Sec. 101

### Prior Commercial Use

현재까지 영업방법 특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Prior Commercial Use 방어의 사용이 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허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 방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가 출원된 날짜 또는 공개된 날짜로부터 최소 1년 이전에 Prior Commercial Use가 발생해야 한다.

### Best Mode Requirement

발명자가 미 특허청에 Best Mode[3]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특허침해 소송시에 더 이상 유효한 방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은 여전히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Advice of counsel

이 법안은 연방소송법에 의해 제정된 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다. 즉, 변호사의 침해감정을 받지 않은 사실 혹은 그러한 감정을 법원이나 배심원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의 특허침해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Civil Action

Ex Parte Reexamination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더 이상 district court에 사건을 가져갈 수 없으며, 오직 연방항고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만 항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즉시 유효하며 오늘 현재 district court에 계류된 모든 사건들은 기각될 것이다.

### Limitation on Joinder of Defendants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 여러 당사자들을 같이 피고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해당 피고들이 공동으로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피고들에 해당하는 사실판단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만, 여러 피고들을 한 소송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은 Patent Troll 들이 무제한으로 여러 피고들을 한 소송에 포함시켜, 특허소송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발효시점에 따른 분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효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즉시(2011년 9월 16일) 발효**

- Non Patentable Subject Matter
- Micro Entity Status
- Prior Commercial Use
- Best Mode Requirement
- Civil Action
- Limitation on Joinder of Defendants

**10일 뒤(2011년 9월 26일) 발효**

- Prioritized Examination

**1년 뒤(2012년 9월 16일) 발효**

- Pre-Issuance Third Party Submissions
- Inter Partes Review
- Transitional Business Method Review
- Supplemental Examination
- Advice of Counsel

**1년 반 뒤(2013년 3월 16일) 발효**

- First to File
- Derivation Proceedings
- Post Grant Review

## 결론 및 특허전략

### 신속한 출원 Procedure

First to File 조항에 비추어,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물론 신속한 출원이다.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발명 제출 프로세스를 간략화하여, 신규발명이 최단 시간에 한국 특허청에 출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우선권 출원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미국 출원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특히 Hilmer[4] Rule이 폐지되므로 인해, 한국 우선권 주장일이 공격용으로도 방어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원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여전히 필요하다. 추후 미국 출원 시에 갖추어야 될 모든 명세서 요건(예를 들면, Enablement 요건 및 Written Description 요건[5])을 한국 출원이 갖추지 못했다면, 미국 출원서는 결함있는 출원 밖에 되지 못하며, CIP 등을 통해 결함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출원수속 상에서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Festo[6] 판례에 따라 균등론하에서의 특허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실현가능한 권리범위를 당초 출원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Post Grant Review, Inter Partes Review, PreIssuance Submission 등을 통해 제 3자가 분명히 특허성에 영향을 미칠 선행기술을 제시할 것이므로, 미리 그러한 선행기술들을 조사하여 IDS로 제출해 둔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특허를 등록받고, 그리고 추후에도 공격당할 빌미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경쟁사 특허조사

Post Grant Review, Inter Partes Review, Pre-Issuance Third Party Submission 등의 새로운 규정을 활용하여, 경쟁사의 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사의 기술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허출원의 공개문서를 분석하고, 해당 특허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를 하여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 신속한 특허취득

다소 비용이 비싼 것이 결점이긴 하나, 만약 1년 이내에 특허를 취득해야할 비지니스 요구가 있다면, Prioritized Examination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 비침해 의견서 획득

미국 변호사로부터 비침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고의침해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법제화되긴 했으나, 침해가능성이 있는 특허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록 고의침해로 인한 treble damage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침해이슈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행한 절차에 따라 damage 크기를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해이슈가 제기되었다면 미국 변호사의 비침해 의견서를 받아 놓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 Limitation on Joinder of Defendants 규정 활용

특허침해로 여러 회사가 피소되었고, 모든 피고들이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공통점만 있는 경우, 위의 규정을 활용하여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

## 출원전 발명공개 금지

비록 미국에서는 1년간의 grace period가 제공되어 있어서, 발명자가 공개를 한 이후 1년 이내에 출원하게 되면 무방하지만, 한국의 경우 단지 6개월간의 grace period 만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absolutely novelty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급적 출원을 실시한 이후에 발명을 공개토록 하고, 만약 공개해야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미국에서 provisional application을 제출해 놓으므로써 해당 공개사실이 외국 출원 시에 선행기술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011. 11

3) 35 U.S.C. Sec. 112, first paragraph
4) An application's foreign filing date under Sec.119 could be used to antedate prior art but could not be used as affirmative prior art under current Sec.102(e). In re Hilmer, 53 C.C.P.A. 1288. (1966). 즉, 외국출원일은 공격용으로는 사용가능하나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임.
5) 35 U.S.C. Sec. 112, first paragraph
6)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68 USPQ2d 1321 (CAFC 2003)

# 표준특허와 프랜드?!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갤럭시폰, 갤럭시탭 등의 갤럭시 제품군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군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태까지의 소송에서는 애플이 적극적으로 삼성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에서 애플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이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의 표준특허를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F/RAND 논리를 받아들여 삼성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최근 특허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특허란 무엇이고, F/RAND란 무엇일까? 먼저 표준특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삼성과 애플사례를 토대로 F/RAN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 지 용**
KBK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표준특허 정의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또는 Standard Patent)란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표준규격을 따르는 장치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특허 또는 특정 표준화 단체에서 작성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essential)으로 이용 또는 실시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특허는 대부분의 IT 분야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BT 분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 또는 그룹로서 비디오/오디오 압축 기술 분야에는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이 있으며, 통신 기술분야에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등이 있다.

표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특허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표준화의 중요성에 따라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표준특

허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도 바로 이 표준 특허 중 하나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와 3G 기술에 관한 것이다.

## 특허풀 (Patent Pool)

표준 특허를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특허풀이다. 표준 특허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기술이지만, 어떤 회사가 어떤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표준 특허를 가진 회사라도 다른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려면 각 회사별로 침해금지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과다한 특허비용과 소모적인 기술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회사들이 특허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허풀을 결성하고 있다.

특허풀은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와 기타 지식재산권을 크로스라이선스 하는데 합의한 최소 두 개 이상의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다수의 라이센서들이 특허업무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하여 각각 소유하는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집중적으로 허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정의될 수 있다[1].

즉, 특허풀은 특허에 대한 공동의 이익(예를 들어, 라이센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의 성격이 같다.

특히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대상으로 여러 회사들이 모여 특정 풀을 만들고, 해당 풀에 포함된 회사들은 권리를 상호 공유한다. 다만, 해당 특허풀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는 실시료를 지불하고 해당 특허풀에 등록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특허풀을 구성하려는 기술/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고, 특허풀 내의 특허 기술이 관련 상품의 생산 또는 실시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라이센싱 수요 역시 충분이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기술을 보유한 권리자들은 특허풀을 구성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에 가까운' 표준특허에 있어서 특허풀 구성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특허권의 본질은 독점배타권이므로 특허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본질이 '표준특허'로서 '실시할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는 기술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가 바로 본격적인 우리 논의의 시작점이다.

**특허권의 성격과 표준특허에서 권리 제한의 필요성**

## 특허권의 독점배타성

특허권을 법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특허법 제1조에서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여,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특허권의 속성인 독점권은 우수한 기술을 세상에 공개한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대가적 성질로서 우수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특허법의 취지와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며, 일반 특허권에 대해 허여된 권리 범위 내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표준특허는 비록 그 특허가 전체 표준 기술의 일부에 대한 것이라도, 해당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 전체 표준 기술을 실시할 다른 방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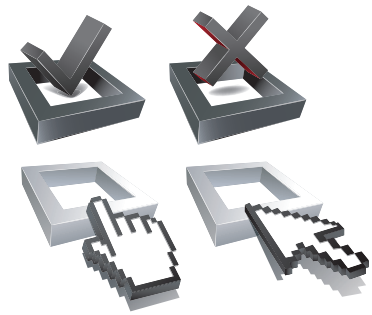

1) 'IT분야 주요 특허출원 분석 – MPEG LA 특허풀을 중심으로', 200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없게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특허권자에게 무제한적인 독점권을 허여하는 것이 i)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긴장 관계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중략…)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준 특허는 해당 표준 기술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것으로서, 표준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무제한 인정할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가질 시장 지배적 지위 역시 특허법에서 목적으로 하는 특허기술 공개에 따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즉, 발명자가 심혈을 기울여 고안한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 지위를 인정하는 특허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간의 법리적 판단은 산업계에 마치 양날의 칼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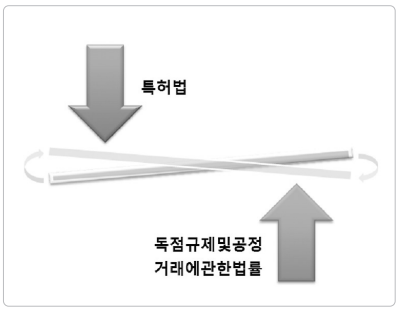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프랜드(F/RAND)이며, 이하에서는 F/RAND가 무엇이고, F/RAND가 실제 사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표준특허의 공정사용과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항

### 프랜드(F/RAND)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랜드(F/RAND)란 표준특허에 대해서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고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해당 특허를 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표준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 등을 하는 대신 반대급부로서 특허권자에 정당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F/RAND는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유사한 것으로서, 유럽에서는 FRAND로 불리고 북미쪽에서는 RAND로 불리나 양자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F/RAND 규정은 표준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로 표준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 등을 방해함으로써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앞서 밝혔던 네덜란드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의 표준특허에 기반한 침해금지 주장에 대해서 애플이 반대 논리로 내세운 것이 바로 F/RAND이다.

### 프랜드(F/RAND) 요건

F/RAND 조항은 I) 공정(Fair)하고, ii) 합리적(Reasonable)이며, iii)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할 것은 독점적이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것은 로열티 관점에서 실시자들 간에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할 것을 의미하며, 비차별적인 것은 실시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실시 허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랜드 조항의 첫 번째 요건인 공정(Fair)은 '경쟁시장에 반하지 않고,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치와 무관하게 비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를 할 것을 의미한다. 즉, 표준 기술이면 이를 개발한 사람 이외

F/RAND 조항의 기본 원칙

에도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드 조항의 두 번째 요건인 합리성(Reasonable)은 라이선스 금액에 관련된 것이다. 특정 사업자의 기술이 표준 기술로 채택됨에 따라 특허권자는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F/RAND에 의하면 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특허기술의 이용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해당 표준기술의 사용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통상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라이센서(Lisensor)는 되도록 높은 비용을, 라이센시(Lisensee)는 되도록 적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프랜드 조항의 마지막 요건인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은 이용자들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받거나, 특허권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각 이용자인 사업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즉, 누구하고는 친하니까 우대를 해주고 누구하고는 안 친하니까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면 안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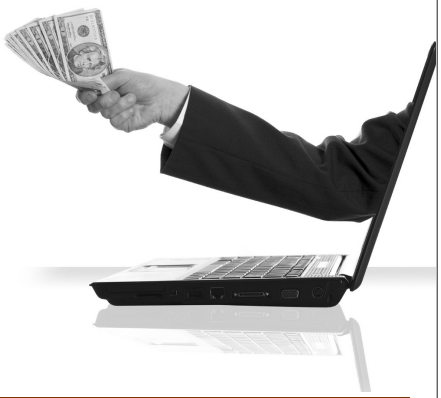

## F/RAND 조항과 적용 사례

그럼, 지금부터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소송 사례들에서 F/RAND 조항이 항상 우선하는지, 표준특허는 항상 그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삼성 vs. 애플

서두에서와 같이 최근 삼성은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무선통신기술(UMTS, 3G 관련)에 관련된 표준기술의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애플은 상술한 'F/RAND 조항'으로 대응하였다. 즉, 애플측은 침해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특허권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기술인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에 따라 제공될 의무가 있음에도 삼성은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채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F/RAND 조항에 따른 사전 협의 없이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삼성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다.

### 노키아 vs. 애플

다만, 표준기술이라고 해서 항상 F/RAND 조항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노키아와 애플 간에 통신기술에 대해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었는데, 노키아측에서는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및 IE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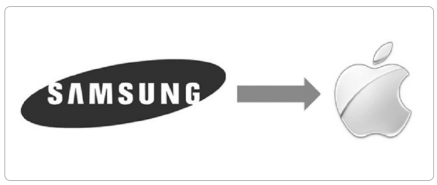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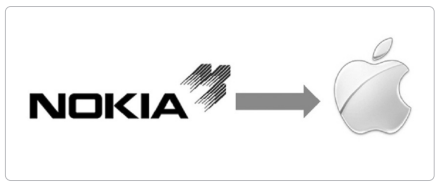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에 해당하는 표준 특허들을 애플이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때, 노키아측에서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각 표준 특허 건들에 대해서 선언(Declaration)[2]을 하였고, 애플 측에 소송 전 이미 수차례의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였지만 애플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 지방 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에서는 노키아 측이 F/RAND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노키아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최종 판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애플 측에서는 많은 사용료를 물어야 했다. 즉, F/RAND 규정이 항상 표준 특허의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표준특허 보호 방향과 전망

최근 삼성과 애플의 사건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F/RAND를 이유로 1차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삼성의 항소로 소송은 계속될 여지를 안고 있으며, 설사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급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표준 특허에 대해 합리적인(Reasonable) 대가를 지급할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디자인 특허로 시작된 양사 간의 법정공방은 이제 지식재산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 관점에서 유럽에 국한되어 시작된 소송은 전 세계의 각국 법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는 비단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애플과 삼성의 대상 상품뿐만이 아니더라도,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 할 것이다.

이들의 분쟁사례를 통해 본 소고에서는 표준 특허와 FRAND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어 보았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과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열린 결말을 이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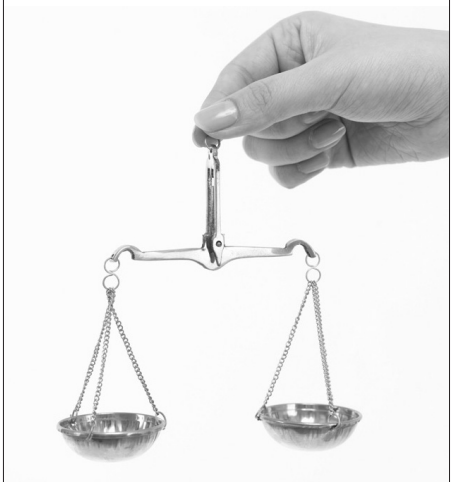

## 마치며

IT 업계가 고도해짐에 따라 표준특허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며, 표준 기술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완성하므로 각 표준 특허들은 서로 이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개발회사 및 제조회사 등 어느 하나의 사업자가 표준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표준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표준기술의 효용성 확보를 위해 특허풀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술의 공유 및 공정거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특허권과 특허풀을 남용하는 자에 대한 규제 기준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F/RAND 조항은 이러한 규제 기준의 하나로서 표준 특허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F/RAND의 불명확한 요건들은 케이스들이 축적됨에 따라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서 정립될 것이다. 2011. 11

2) 선언(Declaration) 이라함은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음을 ETSI 등 표준 기구에 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준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들은 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선언 의무를 성실히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선언 의무의 수행이 FRAND 요건의 필요조건이라는 견해도 있다.

# 특허풀의 표준특허와 표준화 기구의 선언특허 간의 상관관계 분석

특허풀 MPEG LA의 표준특허와 표준화기구 ISO 및 ITU 등의 선언특허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표준특허 및 선언특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이 준 하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터 선임

## 1 들어가며

특허와 표준, 요즘 뉴스와 신문에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두 단어이다. 표준은 기술의 공유 및 확산을 대표하고, 특허는 기술의 사유 및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단어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적 특성과 전 세계로 확대되는 시장성으로 인하여 서로 결합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바로 표준특허(혹은 핵심특허)이다. 근래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도 삼성이 애플과 대등한 위치에서 힘을 겨룰 수 있는 것도 삼성이 통신기술관련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특허풀(Patent Pool)인 MPEG LA의 특허풀 등에 포함된 특허와 같이 필수성 평가를 거쳐 실질적으로 엄청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필수특허(Essential Patent) 및 표준화기구(ISO, IEC, ITU, IEEE, ETSI 등)의 선언서에 필수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포함되는 선언특허(Declared Patent)가 현재 국내에서는 모두 표준특허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필수특허는 표준특허이며 선언특허는 필수특허를 일부 포함하는 표준관련 특허이다. 그렇다면, 표준화기구의 선언특허에는 과연 필수특허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이러한 궁금증을 이제부터 MPEG LA의 특허풀과 표준화기구(ISO, IEC, ITU 등)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들의 직접 비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 2 MPEG LA와 표준화기구

분석에 앞서 관련되는 특허풀과 표준화기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 (1) MPEG LA

MPEG LA는 MPEG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다수의 특허권자와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자 간의 라이센싱을 대행해주는 라이센싱 대행기관으로 1996년에 발족된 이후 가장 성공한 특허풀로 평가받고 있다. MPEG LA의 라이센싱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특허풀 비즈니스에서 특허권자(Licensor; 이하 라이센서)는 라이센스 관리를 MPEG LA에 위임하고, MPEG LA는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기술수요자(Licensee; 이하 라이센시)와 포트폴리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기술수요자로부터 징수한 로열티를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특허권자들에게 배분한다.[1)]

MPEG LA와 같은 특허풀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도 다수의 라이센서가 보유한 특허들을 단일화된 경로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다수의 라이센시들과 연계하여 라이센서와 라이센시들 각자가 라이센스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며 또한 기술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라이센싱 프로그램 때문인 것이다.

MPEG LA의 웹사이트(www.mpegla.com)를 들여다보면, Current Pools 메뉴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8개의 특허풀과 각 특허풀의 로열티 정책 및 필수특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풀마다 책정된 로열티율이 서로 다르며, 이 로열티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

| 특허풀 | 로열티 |
|---|---|
| MPEG-2 | $2.00~4.00/unit |
| ATSC | $5.0/unit |
| AVC/H.264 | $0.10~0.20/unit |
| VC-1 | $0.10~0.20/unit |
| MPEG-4 Visual | $0.25/unit |
| MPEG-2 Systems | $0.25/unit or ¥20/unit |
| 1394 | $0.25/unit |
| MPEG-4 Systems | License is no longer offered |

〈표1. 특허풀의 로열티 정책〉[2)]

MPEG LA에서는 또한 각 특허풀의 표준특허 리스트를 제공한다. 이 리스트는 3개월의 주기로 1년에 4번 갱신되며 라이센서의 특허번호가 나열되어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및 ETRI 등 우리나라의 기업과 기관들의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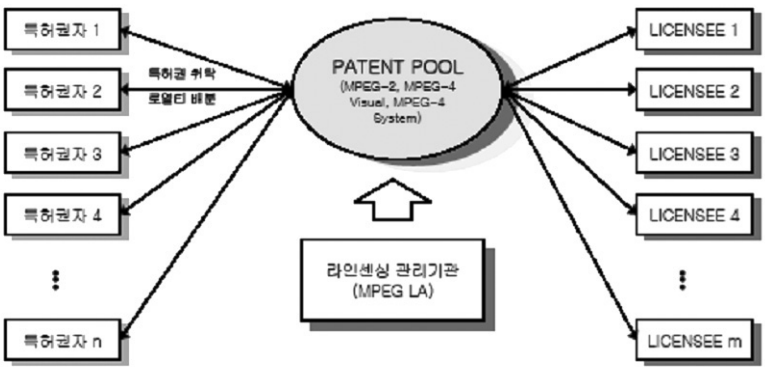


〈그림1. MPEG LA에 의한 포트폴리오 라이센싱 비즈니스 모델〉

### (2) ISO/IEC/ITU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모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공적 표준화기구이다. 이들 표준화기구는 특

October 1, 2011 MPEG-2 Attachment 1 Page 1 of 41

Alcatel Lucent

US 4,970,590[1]
DE 68924764[7]
FR 0374548[7]
GB 0374548[7]
IT 1228109[2]
JP 3,011,338[3]
SE 0374548[7]

US 4,833,543[4]
DE 3785589.1[2]
FR 0230338[2]
GB 0230338[2]
IT 22728 BE/93[2]

US 5,453,790

DE 69011422*,[5]
FR 0401638[6]
GB 0401638[6]
IT 1,230,235[5]
SE 0401638[6]

〈그림2. 표준특허 리스트의 예(특허풀 MPEG-2)〉

허 라이센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로열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공동특허정책(Common Patent Policy)에서도 무료(Royalty Free) 혹은 RAND 조건[3]으로 라이센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분위기는 무료 라이센싱이나 정책상 RAND 조건이며, 특별한 대행기관 없이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라이센싱은 진행된다. 표준화기구에서는 필수성 심사가 곤란하고 RAND 조건에 대한 상업적 정의가 미흡하여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표준화기구에도 Patent Database가 있지만 특허관련 정보는 표준화기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표준화기구 웹사이트의 IPR정보는 부실한 상태이다.[4] 아래 그림은 표준화기구 ISO 및 ITU의 IPR 정보제공 사이트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 (3) IEEE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미국표준협회(ANSI)에 의하여 미국국가표준을 개발하도록 인증받은 표준개발기구이며, 세계 각국의 전기 및 전자 기술 분야의 학자, 기술자가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의 기술자 단체로서 지역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는 민간단체이다. IEEE는 단체 표준화기구이며, 또한 사실상 표준[5]화기구이다. IEEE도 무료(Royalty Free) 혹은 RAND 조건으로 라이센싱을 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분야 주요 특허풀 분석 – MPEG LA 특허풀을 중심으로", 2007. 3, pp. 49–67
2) MPEG LA 특허풀의 로열티 정책 중 각 특허풀의 대표적인 사항만 나타낸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www.mpegla.com의 Agreement 메뉴의 Patent Portfolio License를 참고
3) 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자는 표준기술을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투자비용에 대해 보상받게 하는 것
4) 김광식, "IT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위협 대응체계 구축 방향", 2007. 01

**ISO document reference:** ISO/IEC 14496-1:1999

Domain: MPEG-4
Id Number: ISO/IEC 14496-1:1999 - 34
Committee Reference: ISO/IEC JTC 1/SC 29/WG 11
Title: Information technology -- Coding of audio-visual objects -- Part 1: Systems
Organization: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Corporate Licensing Department
2-2-3 Marunouchi, Chiyoda-ku
JP-Tokyo 100-8310
Japan
Tel. No.: +81 3 32 18 34 65
Fax. No.:
URL:
Main Contact: Mr. Satoshi Usami
E-mail: 367343@iso.org
Patent License Declaration:
Patent Title:
Patent Number:
Patent Status:
Patent Version:
Patent Country:
Patent date:

〈그림3. ISO의 Patent DB〉

| Statement Id | Patent Id | Rec No. | Organization | Patent |
|---|---|---|---|---|
| F651-01 | None | F.651 | AT&T Corp. | |
| G107-01 | G107-01-01 | G.107 | Lucent Technologies | 6931017 |
| G107-01 | G107-01-02 | G.107 | Lucent Technologies | 1434388 |
| G113_Appl-01 | G113_Appl-01-01 | G.113 Appendix 1 | Lucent Technologies | 6931017 |
| G113_Appl-01 | G113_Appl-01-02 | G.113 Appendix 1 | Lucent Technologies | 1434388 |
| G168_Amd1-01 | None | G.168 (2009) Amd.1 (ex G.EEC, G.168 Annex F) | Qualcomm Incorporated | |
| G4kbps-01 | G4kbps-01-01 | G.4kbps | Nortel Networks Limited | 5 774 847 |
| G4kbps-01 | G4kbps-01-02 | G.4kbps | Nortel Networks Limited | 5 642 464 |
| G851-01 | None | G.851 | ECI Telecom Ltd. | |
| G852-01 | None | G.852 | ECI Telecom Ltd. | |

〈그림4. ITU-T의 Patent DB〉

| Std No. | Patent Owner | Contact for License | Patent Serial No. (if indicated) | Letter Date | Assurance Rec'd |
|---|---|---|---|---|---|
| 802.11 |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 Davis, California 95616 | Dr. Kamilio Ferer, tel: 1-916-752-8127, fax: 1-916-752-8428 | 4,339,724 US 1130871 Canada 4,567,602 US 1211517 Canada 4,644,565 US 1265851 Canada | 1 Jul 94 | yes |
| 802.11 | **Motorola Inc.** 1303 East Algonquin Road, Schaumburg, Illinois 60196 | Hugh C. Dunlop - European Patent Attorney, tel: 1-708-576-0379, fax: 1-708-576-3750 | not indicated | 1 Mar 94 | yes |
| 802.11 | **Intermec Corp** 6001 36th Avenue West, PO Box 4280, Everett, WA 98302-9280 | L. David Rish - Intellectual Property Law Counsel | not indicated | 26 Oct 95 | yes |
| 802.11 | **Standard Micro-systems Corp** | Brad Herrin - Manager Portable Systems email: Bradley.Herrin@att | none known | 00 Dec 95 | yes |

〈그림5. IEEE의 Patent DB〉

특허권리 범위나 가격 담합에 관한 논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6] IEEE도 ISO 등 표준화기구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개시된 IPR 정보는 불완전하다. 아래 그림은 IEEE의 IPR 정보제공 사이트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 3 상관관계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MPEG LA의 표준특허와 표준화기구의 선언특허 간의 비교를 통해 상호 간의 부합정도를 분석해보자.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표준화기구의 어떤 표준에 해당되는 특허들이 MPEG LA의 특허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MPEG LA의 각 특허풀에 대응하여 표준화기구(ISO, IEC, ITU, IEEE)의 관련되는 표준을 나열하였다. 또한, 특허수 비교를 위해 MPEG LA 각 특허풀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표준특허의 수 및 표준화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선언특허 수를 함께 나타내었다.[7] 다만, MPEG LA 특허풀 중 ATSC와 VC-1은 해당 표준화기구인 ATSC[8]와 SMPTE[9]의 선언특허 비공개로 비교가 불가능하여 미리 양해를 구한다.

| 특허풀 | 특허풀 표준특허 수 | 표준화기구의 관련 표준[10] | 표준화기구 선언특허 수 | 분석가능 여부 |
|---|---|---|---|---|
| MPEG-2 | 959 | (ISO/IEC JTC1[11]) ISO/IEC 13818-2, 4<br>(ITU-T[12]) H.262 | 62<br>91 | O |
| ATSC | 207 | (ATSC) A/53 | - | X |
| AVC/H.264 | 2,164 | (ISO/IEC JTC1) ISO/IEC 14496-10<br>(ITU-T) H.264 | 294<br>293 | O |
| VC-1 | 678 | (SMPTE) 421M | - | X |
| MPEG-4 Visual | 1,122 | (ISO/IEC JTC1) ISO/IEC 14496-2 | 245 | O |
| MPEG-2 Systems | 225 | (ISO/IEC JTC1) ISO/IEC 13818-1<br>(ITU-T) H.222.0 | 43<br>39 | O |
| 1394 | 273 | (IEEE) 1394-1995, P1394a, P1394b<br>(IEC) IEC 61883-1 | 56<br>0 | O |
| MPEG-4 Systems | 69 | (ISO/IEC JTC1) ISO/IEC 14496-1 | 149 | O |

〈표2. 특허풀에 대응되는 표준화기구의 관련 표준〉

### (1) 특정 특허의 특허풀 및 표준화기구 포함 여부

〈표2〉에서 나타낸 표준화기구의 관련 표준을 참고로 하고, 특허 3건을 임의로 선정 후 특허 Family[13] 조사를 병행하여 특허풀과 그에 대응하는 표준화기구에 포함되는 특허의 개수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 분석은 표준화기구 웹사이트에 선언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특허풀 AVC/H.264

| 특허(등록번호) | 표준화기구 | | 특허풀 AVC/H.264 |
|---|---|---|---|
| | ISO/IEC JTC1 | ITU-T | |
| KR10-0353851 (출원인: ETRI) | KR10-0353851 | KR10-0353851 | KR10-0353851 |
| | | | US7388916 |
| | | | CN200410089708 |
| | | | CN01814313 |
| 계 | 1 | 1 | 4 |

〈표3. 특허 KR10-0353851의 비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출원한 KR10-0353851 특허는 ISO/IEC JTC1과 ITU-T에는 본 출원 1건만 포함이 되어 있으나, 특

허풀 AVC/H.264에는 Family포함 4건이 포함되어 있다.

② 특허풀 1394

| 특허(등록번호) | 표준화기구 | | 특허풀 1394 |
|---|---|---|---|
| | IEC | IEEE | |
| US5384808 (출원인: Apple) | - | US5384808 | US5384808 |
| | | | CA2151373 |
| | | | DE69332804 |
| | | | FR677191 |
| | | | GB677191 |
| | | | IT69642BE/2003 |
| | | | JP3399950 |
| | | | SE677191 |
| 계 | 0 | 1 | 8 |

〈표4. 특허 US5384808의 비교〉

Apple사에서 출원한 US5384808 특허는 IEC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IEEE에는 본 출원 1건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특허풀 1394에는 Family포함 8건이 포함되어 있다.

③ 특허풀 MPEG-2

| 특허(등록번호) | 표준화기구 | | 특허풀 MPEG-2 |
|---|---|---|---|
| | ISO/IEC JTC1 | ITU-T | |
| US4985768 (출원인: Victor Company of Japan) | - | US4985768 | US4985768 |
| | | | DE69024235 |
| | | | DE69030819 |
| | | | FR379217 |
| | | | FR572046 |
| | | | GB379217 |
| | | | GB572046 |
| | | | HK1001182 |
| | | | HK1001183 |
| | | | JP02530217 |
| | | | JP2072546 |
| | | | USRE34965 |
| 계 | 0 | 1 | 12 |

〈표5. 특허 US4985768의 비교〉

Victor Company of Japan사에서 출원한 US4985768 특허는 ISO/IEC JTC1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ITU-T에는 본 출원 1건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특허풀 MPEG -2에는 Family포함 12건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예시에서 보듯이 특허 1건에 대해 표준화기구의 경우에는 평균 1건 이하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풀의 경우에는 평균 8건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특허풀과 표준화기구의 라이센싱(로열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허풀과 같은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통한 라이센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특허 Family도 로열티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라이센서들은 최대한 많은 특허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심지어는 동일 특허의 Family를 200개 이상 포함시키기도 한다.

### (2) 특허풀 표준특허와 표준화기구 선언특허의 대비

그러면, 이제는 특허풀에 포함되는 표준특허와 해당 특허풀과 관련되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선언특허 간에 대비를 시작해보겠다. 분석은 MPEG LA의 총 8개의 특허풀 중 하나인 MPEG-2 특허풀을 선정하고 이와 대응되는 ISO/IEC JTC1과 ITU-T와의 비교로 진행된다.

① 1차 분석

분석을 위해서는 일단 선언특허 중 특허번호가 존재하여야 한다. 앞서 표준화기구의 소개에서 표준화기구 웹사이트의 Patent DB의 예시와 같이 특허번호를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표2〉의 관련표준을 기준으로 표준화기구의 특허번호가 기재된 선언특허와 특허풀 MPEG-2의 표준특허를 비교하였더니 ISO/IEC JTC1에는 6건, ITU-T에는 10건이 MPEG-2의 표준특허와 부합되었다.

5) 사실상(De Facto) 표준 : 특정 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 혹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규격
6) 윤기호 외4, "표준특허 선정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및 합리적 라이센싱 방안에 대한 연구", 2010. 12. 19, pp. 36
7) MPEG LA 및 ISO, IEC, ITU, IEEE 웹사이트의 2011년 7월 자료 기준
8)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미국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위원회
9) SMPTE (Th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 미국 영화 텔레비전 기술 인협회
10) MPEG LA 웹사이트(http://www.mpegla.com)의 각 특허풀의 Intro 및 FAQ 참조
11) ISO/IEC JTC1 (ISO/IEC Joint Technology Committee 1) :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위원회(ISO/TC97)와 정보기기에 대한 국제표준화위원회(IEC/TC83)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동기술위원회
12) ITU-T (ITU Telecommu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부문
13) 특허 Family : 동일발명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출원된 경우 해당 특허를 모두 특허 Family라 함

| 항목 | | 표준화기구 | | | |
|---|---|---|---|---|---|
| | | ISO/IEC JTC1 | | ITU-T | |
| 선언특허 수 | 특허번호 기재 | 62 | 13 | 91 | 48 |
| | 특허번호 미기재 | | 49 | | 43 |
| MPEG-2의 표준특허와 부합된 선언특허 수 | | 6 | | 10 | |

〈표6. 1차분석 대비표〉

② 2차 분석

1차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에는 서로 중복되는 특허가 있다. 다음 〈표7〉에는 특허풀 MPEG-2의 표준특허와 부합된 선언특허를 나열하였고 중복되는 특허는 음영처리로 구분하였다. 특허번호는 같으나 표준화기구에서 출원인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및 특허 Family의 경우 모두 중복처리하였다. 또한 부합된 선언특허의 Family도 특허풀의 표준특허에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제거 후 선언특허의 Family도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표7〉에 함께 포함하였다.

③ 참고 분석

참고분석에서는 2차 분석에서 중복제거 완료된 부합 특허의 Family를 특허풀 MPEG-2의 표준특허와 비교하였다. 본 분석은 선언특허의 Family를 확장하여 특허풀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표준화기구와 특허풀 간의 부합도에는 맞지 않으나 선언특허에는 특허번호의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참고적으로 첨부한다.

| ISO/IEC JTC1 | | | ITU-T | | |
|---|---|---|---|---|---|
| 선언특허 | Family 확장 | | 선언특허 | Family 확장 | |
| JP19910148981<br>Fujitsu | CA2029320<br>DE69030056<br>EP431319 | JP02787599<br>US5235618 | US4958226<br>AT&T | CA2024135<br>DE69021500<br>EP425089 | JP03314929<br>JP3133297 |
| JP19910148981<br>Canon | 중복 | | US5227878<br>AT&T | DE69233620<br>EP542474 | JP03104942<br>JP6165163 |
| FR2599577<br>France Telecom | DE3767919<br>EP248711<br>FI198702380<br>FI86241<br>SE248711<br>DE248711 | JP62291280<br>NO198702245<br>US4796087<br>GB248711<br>IT248711 | US5193004<br>Columbia University | CA2096431<br>DE69129595<br>DE69130329<br>EP564597<br>EP630157 | JP02746749<br>JP6504169<br>USRE35093<br>WO1992010061 |
| GB248711<br>France Telecom | 중복 | | JP19910148981<br>Fujitsu | CA2029320<br>DE69030056<br>EP431319 | JP02787599<br>US5235618 |
| SE248711<br>France Telecom | 중복 | | JP19870213494<br>KDDI | JP1835550<br>JP5048996 | |
| IT248711<br>France Telecom | 중복 | | US4958226<br>Lucent Technologies | 중복 | |
| | | | US5227878<br>Lucent Technologies | 중복 | |
| | | | EP00279053<br>Robert Bosch | DE3704777<br>DE3769306 | |
| | | | US4985768<br>Victor Company of Japan | DE69024235<br>DE69030819<br>EP379217<br>EP572046<br>HK1001182<br>HK1001183 | JP02530217<br>JP2072546<br>JP2192378<br>JP2214283<br>JP7112283<br>USRE34965 |
| | | | US5103307<br>Victor Company of Japan | JP2072631<br>JP3216089<br>JP7112284 | |
| 중복제거 후 MPEG-2의 표준특허와 부합되는 선언특허 수 | | 2 | 중복제거 후 MPEG-2의 표준특허와 부합되는 선언특허 수 | | 8 |

〈표7. 2차분석 대비표〉

## 4. 마무리하며

특허풀 MPEG-2 표준특허와 표준화기구 선언특허의 부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9〉와 같다. ISO/IEC JTC1의 경우 MPEG-2와 관련되는 표준인 ISO/IEC 13818-2,4에 해

| ISO/IEC JTC1 | | | | ITU-T | | | |
|---|---|---|---|---|---|---|---|
| 선언특허 | MPEG-2의 표준특허에 부합된 Family | | 개수 | 선언특허 | MPEG-2의 표준특허에 부합된 Family | | 개수 |
| JP19910148981<br>Fujitsu | CA2029320<br>EP431319 | US5235618 | 3 | US4958226<br>AT&T | CA2024135<br>DE69021500<br>EP425089 | JP03314929 | 4 |
| FR2599577<br>France Telecom | DE3767919<br>EP248711<br>FI86241<br>US4796087 | GB248711<br>IT248711<br>SE248711 | 7 | US5227878<br>AT&T | DE69233620<br>EP542474 | JP03104942 | 4 |
| | | | | US5193004<br>Columbia University | CA2096431<br>DE69129595<br>DE69130329<br>EP564597<br>EP630157 | JP02746749<br>USRE35093 | 7 |
| | | | | JP19910148981<br>Fujitsu | CA2029320<br>DE69030056<br>EP431319 | JP02787599<br>US5235618 | 5 |
| | | | | JP19870213494<br>KDDI | | | 0 |
| | | | | EP00279053<br>Robert Bosch | DE3769306 | | 1 |
| | | | | US4985768<br>Victor Company of Japan | DE69024235<br>DE69030819<br>EP379217<br>EP572046<br>HK1001182 | HK1001183<br>JP02530217<br>JP2072546<br>USRE34965 | 9 |
| | | | | US5103307<br>Victor Company of Japan | | | 0 |
| MPEG-2의 표준특허와 부합되는 선언특허 및 그 Family 수 | | 12 | | MPEG-2의 표준특허와 부합되는 선언특허 및 그 Family 수 | | 38 | |

〈표8. 참고분석 대비표〉

당되는 선언특허는 62건이었으며, 이중 MPEG-2에 표준특허로 포함된 특허는 2건으로 선언특허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ITU-T의 경우 MPEG-2와 관련되는 표준인 H.262에 해당되는 선언특허는 91건이었으며, 이중 MPEG-2에 표준특허로 포함된 특허는 8건으로 선언특허 중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와 같이 선언특허 내 표준특허의 비율은 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부합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필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표준화기구의 특성 및 특허풀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표준화기구의 IPR 라이센싱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표준화기구의 선언특허 중 표준특허의 비율이 1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준특허로 명명한다는 것은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차후에라도 조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1. 11

| 항목 | 표준화기구 | | | |
|---|---|---|---|---|
| | ISO/IEC JTC1 | | ITU-T | |
| | 특허수 | 부합도 | 특허수 | 부합도 |
| MPEG-2 표준특허에 부합되는 선언특허 | 2 | 3.2% (2/62) | 8 | 8.8% (8/91) |

〈표9. 특허풀 표준특허와 표준화기구 선언특허의 부합도〉

# "우리은행"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표인가?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문제의 제기) 2002년에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상호와 CI를 변경하였다. 또한, '우리은행'이라는 문자상표를 '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다른 은행에서 상기 등록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손 지 원
H&H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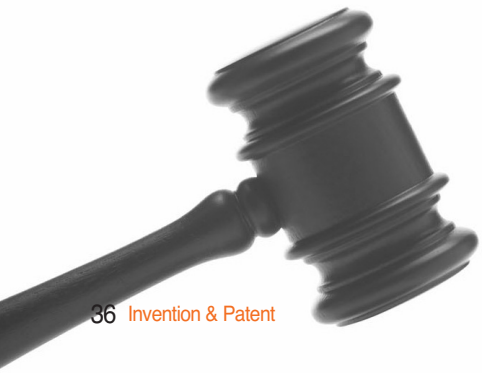

### 대법원 판례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우리'와 '은행'이 결합된 서비스표인바,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등으로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어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표시여서 식별력이 없으며, 그 결합에 의하여 '우리'와 '은행'이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 상표법에서 식별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상표법은 제6조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이므로, 어떤 표지가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표지를 통해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하며 식별력은 어떤 표장이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1)]

이러한 식별력은 상표마다 구체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심사 시에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심사의 신속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표법은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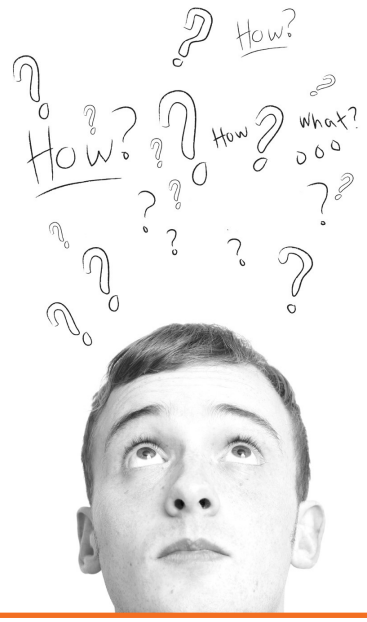


##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들

### 1 보통명칭상표[2)]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보통명칭상표라 한다. 보통명칭(generic term)이란 "컴퓨터" "커피"와 같이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등을 말한다.[3)]

### 2 관용상표[4)]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관용표장상표라 한다. 관용표장이란 청주에 있어서 "정종", 구강 청량제에 있어서 "인단"과 같이 특정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한다.

### 3 기술적 표장[5)]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표지를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한다.

기술적 표장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표법상 열거된 것 이외에도 일등급 우유, 명품 의류, 노란색 우유 등과 같이 상품의 등급, 품위, 색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며 그밖에 슬로건이나 광고설명적 어구 등 성질 표시적인 표장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

기술적 표장은 성격상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 거래상 누구나 사용해야할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 4 현저한 지리적 명칭[7)]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1)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35면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5)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6)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41면
7)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국가명,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 등과 이들의 약칭까지 포함한다.

다만, 그 용어 자체가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는 것이며, "동아", "중동"과 같이 지정학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도라 함은 세계지도(그 일부를 포함) 또는 국내외 국가의 지도 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지도는 물론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 5 흔히 있는 명칭[8)]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포함한다.

### 6 간단하고 흔한 표장[9)]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십자가 모양 등과 도형이나,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10)]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구성자체로 특정인의 상품임을 식별시킬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설사 식별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6가지 식별력 부정의 근거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예시적, 정형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표법 취지상 상표로서 보호할 수 없는 표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우리은행"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장인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표지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 출원 시에 미리 구체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등록을 받을 당시에는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식별력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주어진 사건에서 등록서비스표인 '우리은행'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 회사', '우리 동네' 등과 같이 그 뒤에 오는 다른 명사를 수식하여 소유관계나 소속 기타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의미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고,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로서, 만일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

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느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단어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과 비중에 비추어 이를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고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은행"이라는 단어의 상표로서의 독점권을 부정한 상기의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라는 표장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는 방법은 없는가?

상표법은 형식적으로는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구체적인 사용을 통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는 자타상품식별기능이 있고, 독점적응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1]

즉, 상표의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다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상품표지로서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거래상의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면 그 표지는 앞에서 본 객관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와 적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장은 이미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승인된 셈이어서 일반 공중의 자유사용을 위해 방임하여 둘 공익상의 필요성도 상실된 셈이므로 상표로서의 실질적인 보호요건을 사후적으로 획득한 것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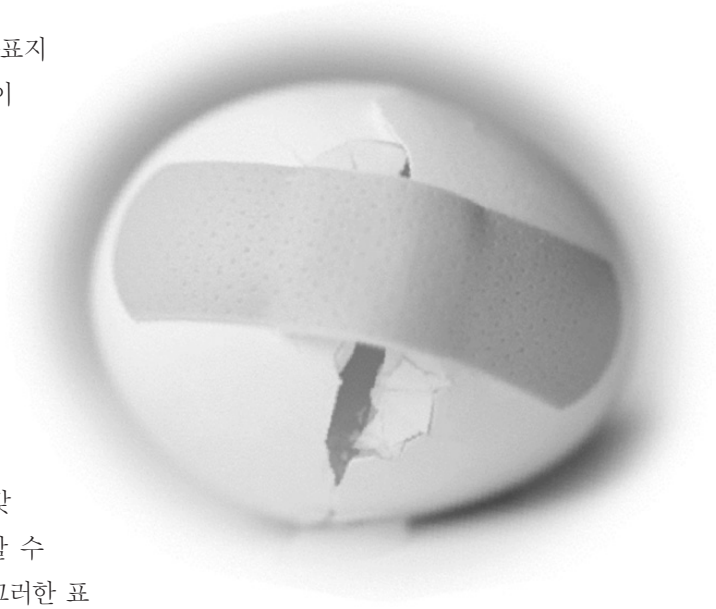

다만,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함은 당해 상품의 유통망, 즉 관계 거래권에 속하는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의 대다수가 당해 표장을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승인하고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먼저 "우리은행"이라는 표장을 수요자가 전해 들었을 때, "우리의 은행"의 의미가 아닌 특정업체를 나타내는 단어로서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타업체에서 자기의 은행을 외부에 표현할 때에 "우리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은행과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여부결정 시 혹은 심결 시에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기와 같은 판단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1. 11

8)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9)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10)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11) 상표법 제6조 제2항
12)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53면

# 특허 Q&A

**Q.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이 각각 상/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 실체심사에서 신규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 예를 들어,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그 하위개념인 '구리(Cu)'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통상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출원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판단한 결과,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인용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출원발명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 '단순한 협력'인가 '실질적인 협력'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 · 심판 · 소송 등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 · 단순보조자 · 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IP

IP 이슈
애플 컴퓨터 지식재산 분쟁의 어제와 오늘
시선집중
'앱스토어'는 과연 애플만의 브랜드인가?
특허&직무발명
특허분쟁과 직무발명보상제도
Zoom-In
패션산업에서 단일 색체상표 가능할까?
IP 칼럼
생활 속에서 변화를 꿈꾸는 것이 발명의 시작이다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활용사례
(주)코엔바이오

# Column

# 애플 컴퓨터 지식재산 분쟁의 어제와 오늘

애플 컴퓨터의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 애플 컴퓨터의 스마트 폰 지식재산 분쟁, 스마트폰 분쟁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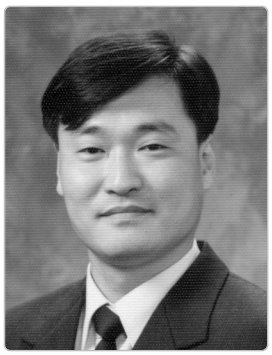

서 호 선
퀄리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문인이 아니면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컴퓨터를 PC로 만들고, 무선전화기를 휴대용 컴퓨터 통신장비로 진화시킨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났다. 1976년 4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허름한 창고에서 그가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 컴퓨터사를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그의 미래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애플 컴퓨터사의 스티브 잡스가 이룩한 지난 30여 년간의 업적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애플 컴퓨터 창업 당시 외화를 벌기 위해 가발, 의류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밤낮으로 만들어 박리다매로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20세기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전기전자 정보통신을 비롯한 IT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업계를 타겟으로 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대립의 양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림 1 최초의 애플I 컴퓨터〉

본고에서는 애플 컴퓨터사가 관련되었던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들을 살펴보고, 근

래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폰 지식재산권 소송의 현황을 알아본다.

## 애플 컴퓨터의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

"많이 맞아 본 선수가 이길 수 있다", 어느 권투 챔피언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애플사는 특허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공격적인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다. 2011년 현재 애플 컴퓨터사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는 미국 상표특허청 내의 심판 사건[1)]만 해도 376건에 달한다. 그러나 애플 컴퓨터사는 과거에 자국 및 세계 각국의 기업들로부터 특허 침해로 제소 당하거나 제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하 과거 애플 컴퓨터사가 관여되었던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 상표권 분쟁

#### 애플사 대 애플컴퓨터 상표분쟁 (Apple Corps v. Apple Computer)

애플사(Apple Corps)는 1968년1월 비틀스(The Beatles)에 의해 설립되었고 애플 레코드로 알려진 영국의 음반회사[2)]이다. 1978년 애플 레코드는 자사의 상표를 애플 컴퓨터사가 침해한 것으로 영국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애플 컴퓨터사의 주장은 상표의 적용범위(류)가 음반과 컴퓨터로 서로 상이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1981년 애플 컴퓨터사는 애플사에 대해 80,000$의 손해 배상액을 지불하였다. 당시 애플 컴퓨터사는 음악 산업에 진출하지 않고 애플사는 컴퓨터 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1986년 애플 컴퓨터사에서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기능을 추가한 Apple IIGS PC와 후속 모델로 맥킨토시가 시판되자 또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91년 애플 컴퓨터사는 2천6백50만 불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사에 지불해야 했다.

〈그림 2 애플사와 애플컴퓨터의 상표권 분쟁 당시 로고〉

2003년 4월에는 애플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MP3 음악을 판매하는 서비스[3)]를 시작하자, 애플사는 계약 위반으로 애플 컴퓨터사를 제소하였고, 음악영국 웨일즈 고등법원은 애플 컴퓨터가 계약에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양사는 디지털 방식으로 재제작(remaster)된 비틀스의 음원과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대립을 계속해오다가, 2010년 11월 16일 애플의 아이튠 스토어(Itune store)에서 재제작(remaster)된 비틀스의 13개 앨범이 제공됨으로써 종결되었다.

1) 미국상표특허청 검색 결과 (2011.10)
http://ttabvue.uspto.gov/ttabvue/v?pnam=Apple%20Inc.%20%20&page=15
2) http://www.applecorpsltd.com/

## 아이맥 도메인 상표 분쟁

1998년 7월 애플 컴퓨터사가 iMac[4]을 시판하기 2개월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사는 압둘 트라야(Abdul Traya)[5]라는 당시 16세의 소년은 appleimac.com 도메인을 등록하였고, 이로부터 애플 컴퓨터와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1999년 4월 애플 컴퓨터사는 트라야에게 소송비와 보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도메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압둘 트라야는 1999년 캐나다에 WestNet[6]이라는 통신 서비스 회사를 창업하여 WIF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 itunes.co.uk 도메인 상표권 분쟁

2000년 11월 영국의 벤자민 코헨(benjamin Cohen)은 itunes.co.uk 도메인을 등록하였다. 이 도메인은 이후 skipmusic.com 과 cyberbritain.com에 제공되었고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애플 컴퓨터사는 2000.10.23자로 영국에 iTunes 상표를 출원하여 2001.3.23자로 상표권을 받아 2004년부터 온라인 음원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에 코헨은 사용하지 않고 있던 itunes.co.uk 를 냅스터에 제공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2005년 11월 애플 컴퓨터사가 itunes.co.uk 도메인을 사용하고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취하되었다.

## iPhone 상표권 분쟁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다국적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Cysco Systems)는 애플 컴퓨터사의 iPhone이 자사의 VoIP(voice over internat protocol) 서비스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였다.

iPhone®

〈그림 3 Cysco Systems의 iPhone 로고〉

이 사건은 2007년 2월 21일 시스코와 애플 컴퓨터가 IPhone 상표를 같이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 뉴욕시와 애플 컴퓨터 간의 상표권 분쟁

2008년 1월 애플 컴퓨터사는 뉴욕시가 녹색도시 캠페인[7]으로 발표한 빅애플 로고가 자사의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미국상표특허청에 제소하였다.

greenyc SMALL STEPS, BIG STRIDES.

〈그림 4 뉴욕시의 녹색도시 캠페인 로고 2011년〉

뉴욕시는 2007년 5월 14일 미국상표특허청에 상표를 출원[8]하였고, 2007년 6월 27일 출원 상표에서 사과 잎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애플 컴퓨터사는 혼동을 주는 유사 상표임을 계속 주장하여 2011년 3월 현재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림 5 뉴욕시의 최초 상표출원 도면〉

### 호주의 Woolworths[9]와의 상표 분쟁

2009년 10월 애플 컴퓨터사는 호주의 수퍼마켓 Woolworth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해당 상표는 Woolworth에서 판매되는 브랜드의 전제품과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6 Woolworth의 로고〉

### 애플 컴퓨터 대 DOPI 상표 분쟁[10]

2010년 3월 애플 컴퓨터사는 애플 랩탑 컴퓨터의 케이스와 가방을 제조하는 호주 중소기업의 DOPI 상표가 자사의 iPod를 거꾸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제소를 하였으나. 호주 특허청에서는 알파벳 'i'와 결합한 상표가 모두 애플 컴퓨터의 권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였다.

### 애플 컴퓨터사와 아마존 간의 '앱 스토어' 분쟁

2011년 애플 컴퓨터사는 아마존(amazon.com)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폰 응용 프로그램 판매 서비스인 Appstore[11]가 자사의 서비스(Apple store)와 유사한 것을 주장하며 미국상표특허청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애플 컴퓨터사의 Appstore 상표 등록을 막기 위한 제소를 하여 2011년 현재 진행 중이다.

### 애플 컴퓨터 상표의 변천

애플 컴퓨터사는 상표관련 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사의 로고를 변경하고 있다. 최초의 로고는 뉴톤의 사과를 상징하였으며, 빈번한 상표 분쟁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변형되는 로고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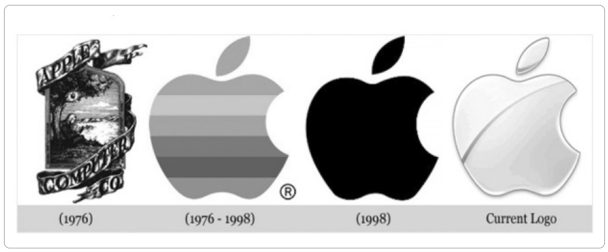


〈그림 7 애플 컴퓨터사의 로고〉

## 특허권 분쟁

###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분쟁

2006년 5월 16일 싱가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는 자사의 MP3 플레이어인

3) 애플컴퓨터의 iTunes Store http://itunestore.com/
4) 1998년 시판된 애플컴퓨터사의 통합형 PC
5) http://news.cnet.com/2100-1023-221921.html
6) http://www.westnet.ca/
7) http://www.nyc.gov/html/greenyc/html/home/home.shtml
8) http://tdr.uspto.gov/search.action?sn=77179942#
9) http://www.woolworths.com.au/wps/wcm/connect/webSite/Woolworths/
10) http://www.smh.com.au/digital-life/mp3s/apples-future-wont-be-brought-to-you-by-the-letter-i-20100312-q27r.html
11) http://www.amazon.com/mobile-apps/b?ie=UTF8&node=2350149011

Zen의 특허를 애플 컴퓨터사의 MP3플레이어인 iPod와 iPod nano가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였다. 2006년 8월 23일 애플 컴퓨터사는 1억 불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iPod 생산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림 8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MP3 플레이어 ZEN〉

### 타이푼 터치 테크놀로지와의 분쟁[12)]

2008년 6월 미국 시에틀에 위치한 타이푼 터치 테크놀로지는 애플 컴퓨터사를 자사의 터치 스크린 특허[13)]를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였고, 현재까지도 다른 업체까지 포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애플 대 HTC[14)]

2010년 3월 2일 애플 컴퓨터사는 HTC가 생산 판매하는 스마트 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자사의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미국 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소장에서 애플 컴퓨터사는 HTC가 자사의 특허 20건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애플 컴퓨터사의 스마트 폰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코닥 대 애플 컴퓨터/RIM[15)]

2010년 1월 코닥사는 애플 컴퓨터사의 아이폰과 리서치 인 모션(RIM)사의 스마트 폰인 블랙베리가 자사의 디지털 영상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미국무역위원회에 제소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 기타 지식재산권 분쟁

### GEM의 'look and feel' 소송[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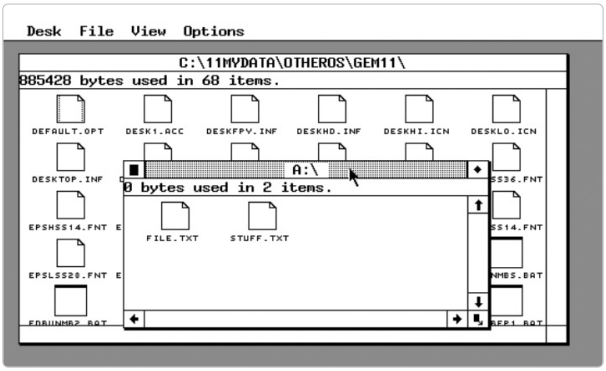


〈그림 9 GEM의 화면 구성〉

애플 컴퓨터사는 1984년 디지털 리서치사에서 발표한 GUI 환경의 GEM (graphical environment manager) 운영체제가 자사의 Mac OS 화면과 '보았을 때의 느낌' (look and feel)이 유사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보았을 때의 느낌' 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판결에 시초를 이룬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이 자사 아이폰의 외형이나 화면의 아이콘, 포장까지 카피했다는 애플사의 주장과 공통점이 많다. 다시 말해서 이번의 분쟁은 과거 애플사의 경험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 애플 대 이머신(eMachines) 분쟁[17)]

1999년 애블 컴퓨터는 우리나라 업체를 비롯한 연

합 기업의 미국 수출품인 eMachines의 노트북 PC인 eOne이 자사의 iMac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여 승소한다. 이로써 2000년 이후 eMachine의 판매는 급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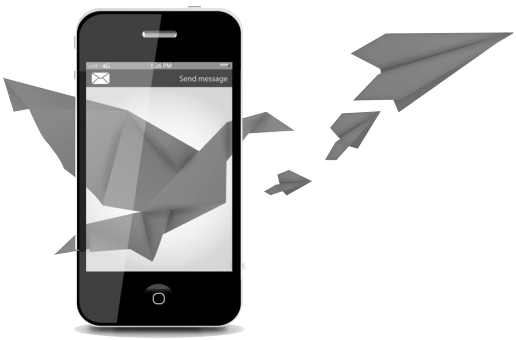


## 스마트폰 지식재산권 분쟁

### 노키아 대 애플

국제특허분쟁을 시작하는 특허권자들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 폰 특허 분쟁은 시장 견제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애플의 스마트 폰인 아이폰3는 지난 2009년 10월 핀란드의 노키아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법원에 제소된 바 있다. 노키아에 의해 시작된 이 특허 분쟁은, 당시 휴대폰 세계 시장 점유율 3%대의 애플사가 노키아의 연간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며 상승세에 있는 것에 대한 견제책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소송 초반에 애플사는 자사의 특허들을 노키아가 침해한 것으로 여러 차례 맞소송을 진행하며,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비한 듯 아이폰3의 생산을 중단하고 아이폰4를 출시하였다.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제소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이 소송은 2011년 6월부터 애플사가 노키아 측에 8억 유로의 손해배상과 향후 판매되는 아이폰 대당 8유로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협상 중에 있다.

### 애플 대 삼성

2011년 4월 15일 애플 컴퓨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자사의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18]하였다.

애플사가 침해를 주장하는 지재권은 터치스크린과 화면 동작에 관한 특허 7건, 디자인 3건, 트레이드 드레스권 3건, 아이콘 상표 8건이다. 여타의 지재권 분쟁과 차이 나는 점은, 통신 기술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제3자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단순 기능, 외형, 아이콘의 모양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애플측이 빠른 소송결과를 위해 판단이 쉬운 권리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애플 컴퓨터가 제시한 7건의 특허들 중 4건의 특허들이 다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활용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분쟁에서 이슈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소송이다. 상품의 이미지나 전체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 하며, 이는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심지어 특정한 판매기법 등과 같은 고유의 식별력을 가지는 특성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 지방법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물건의 형태, 외형적 느낌, 서비스 시설의 외형적 느낌, 판매 방법까지 포함한다.

12) http://www.forbes.com/feeds/afx/2008/06/24/afx5145899.html
13) http://www.i4u.com/22222/typhoon-touch-technologies-adds-apple-and-9-others-dell-suit
14) http://www.engadget.com/2010/03/02/apple-vs-htc-a-patent-breakdown/
15)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4281204575002891721364642.html
16) http://news.cnet.com/Apple-sues-eMachines-for-iMac-look-alike/2100-1040_3-230054.html
17) http://news.cnet.com/Apple-settles-suits-over-iMac-knockoffs/2100-1040_3-237717.html
18) http://qualpat.com/files/board/apple-samsung-lawsuit.pdf

애플 컴퓨터사의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한 것으로 2011년 4월 27일 맞제소를 하였으나, 2011년 6월 27일자로 취하되었고, 다시 5건의 특허를 애플 컴퓨터사가 침해한 취지의 소장[19]을 2011.6.29자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외에도 양측의 소송은 독일, 일본, 네덜란드, 호주 및 우리나라로 확대되어 진행 중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스마트폰 분쟁의 전망

### 스마트 폰 OS의 추이

스마트폰 기술에서 컴퓨터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이고, 이를 위한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는 또 다른 기술 경쟁의 대상이 되어 있다. 현재 애플 컴퓨터사의 스마트 폰은 독자적인 운영체제인 iOS 를 사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내 업계는 구글사의 안드로이드(Android)라는 개방형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점은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s)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애플은 70년대 후반 애플 컴퓨터를 출시하면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부상하였지만, 우리나라와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복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80년대 초 IBM PC가 소개되어 큰 인기를 끌자, 애플은 이에 대응한 매킨토시 PC를 제품화하였다. 매킨토시 PC는 과거 애플 컴퓨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운영체제(OS)와 하드웨어를 비공개로 하여 제품화하였다.

이에 반해 IBM PC는 출시 초부터 내부 회로를 공개하고, 개발 툴이 상용화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OS로 채택하였다. 세계 각국의 연구 개발자들은 IBM PC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오늘날의 PC로 발전시켰으며, 매킨토시는 폐쇄적인 정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방형 운영체제하에서는 제3자들에 의한 응용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독자적인 운영체제는 특정 소수만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가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을 2011년 39.5%에서 2015년 4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iOS는 2011년 15.7%에서 2015년 15.3%로 전망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다른 국제시장조사기관인 Gartner도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을 2011년 38.5%, 2015년 48.8%, iOS는 2011년 19.4%에서 2015년 19.5%로 전망하고 있어 실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애플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 협상을 위한 분쟁의 가능성

통상의 기업 거래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경우 담당자와 결정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부탁하는 쪽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계약 거래를 변경하거나 파기하고 싶은 경우에 특허 분쟁이 활용될 수 있다.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일단 제소하여 협상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마지못해 합의하는

듯이 진행하는 전략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애플의 아이폰은 자체 공장이 없이 여러 제조사의 부품을 구매하여 대만의 한 회사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초 아이폰4의 후속 모델로 기획되었던 아이폰5가 아직 출시되지 못하고 약간 개량된 모델로 아이폰 4S가 출시된 것을 보면, 애플 컴퓨터사는 핵심 부품 수급에 관한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아이템 (일부) | 회사 | 국적 |
|---|---|---|
| 소프트웨어/디자인 | 애플 | 미국 |
| 조립 | Foxconn | 대만 |
| 프로세서 칩 | 삼성 | 한국 |
| 터치스크린 | Balda | 독일 |
| 블루투스 칩 | Cambridge Silicon Radio | 영국 |
| 칩 생산 | TSMC, UMC | 대만 |
| 브로드밴드 칩 | Infineon Technology | 독일 |
| WIFI 칩 | Marvell | 미국 |
| 터치스크린 제어 칩 | Broadcom | 미국 |
| CMOS 칩 | Micron | 미국 |
| NOR 플래시 IC | Intel, SST | 미국 |
| 디스플레이 구동 칩 | National Semi, Novatek | 미국, 대만 |
| 케이스, 기계부품 | Catcher, Foxconn Tech | 대만 |
| 카메라 렌즈 | Largan Precision | 대만 |
| 카메라 모듈 | Altus-Tech, Primax, Lite On | 대만 |
| 배터리 충전기 | Delta Electronics | 대만 |
| 발진기용 크리스탈 | TXC | 대만 |
| 수동소자 | Cyntec | 대만 |
| 콘넥터, 케이블 | Cheng Uei, Entery | 대만 |

애플 아이폰의 생산을 위한 아이템들과 공급업체

## 시장 점유를 위한 전략적 분쟁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플 컴퓨터사는 창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왔다. 게다가 애플 컴퓨터사가 분쟁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특징이 있다. 스티브 잡스는 창업 시부터 언론을 잘 이용한 인물로서, 애플 컴퓨터사는 분쟁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광고 효과를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만 불의 비용을 들인 소송은, 수백만 불의 광고 효과를 가져오며 이로부터 시장 확보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지명도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나라 제조사들의 스마트 폰의 입지가 유명무실해지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 끝으로

이번 지식재산권 분쟁은 애플측이 내세운 권리가 스마트 폰의 외형적인 요소에 치중되어 있어, 스마트 폰 기술의 통신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업체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의 대응 소송은 통신의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를 제시하고 있어서, 혹 크로스 라이선스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어렵게 확보한 원천 기술을 애플 컴퓨터사에 그냥 제공할 우려도 있다. 또한 '보았을 때 느낌 (look and feel)' 의 침해로 애플사가 제소되었던 사례라던가, 국내에서 먼저 유사한 디자인이 출시된 점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애플 컴퓨터사가 제시한 특허들은 다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활용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참조가 필요하다.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하여 단기간에 win-win 으로 끝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통신기술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 기업과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간의 이번 분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지배 논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도출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업계에서는 스마트 폰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보다 많은 기술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디자인 관련 기술을 보다 더 개발하고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미래의 이동통신기술 경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1. 11

# '앱스토어'는 과연 애플만의 브랜드인가?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http://www.etnews.co.kr/201101120126

애플이 소유한 '앱스토어' 상표권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동을 걸었다. 애플리케이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앱스토어 개념이 애플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MS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앱스토어 상표권이 일반 명칭이며 경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PC월드 · 레지스터 등이 11일(현지시각)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인터넷, 컴퓨터 및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소매상점 서비스'로 규정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아이폰'을 위한 앱스토어를 열어 30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애플은 이달 초 맥PC를 위한 '맥 앱스토어'도 선보였다.

이에 대해 MS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고, '스토어'는 소매상점 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명사라고 주장했다. 또 애플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마존, 버라이즌, 보다폰은 모두 안드로이드를 위한 자체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문을 들어 애플 자신도 앱스토어를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S는 "소비자와 업계, 미디어들이 모두 앱스토어를 애플리케이션이 판매되는 온라인 상점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을 애플이 배타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해 말 윈도폰7 운용체계(OS)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했다. IDC는 마켓플레이스에 두 달 만에 4,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됐다고 집계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업체별 애플리케이션 장터 동향

| 업체 | 애플리케이션 장터 이름 |
|---|---|
| 구글 | 안드로이드마켓 |
| 애플 | 앱스토어 |
| RIM | 앱월드 |
| 마이크로소프트 | 마켓플레이스 |
| 노키아 | 오비스토어 |
| HP | 앱카탈로그 |
| 삼성 | 삼성앱스 |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애플은 'APPSTORE' 상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명사처럼 사용하는 'APPSTORE(앱스토어)'가 애플의 상표권 범위에 속한다면 현재 '앱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및 개인들은 애플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과연 한국과 미국에서 애플이 영문 형태의 'APPSTORE'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는지 조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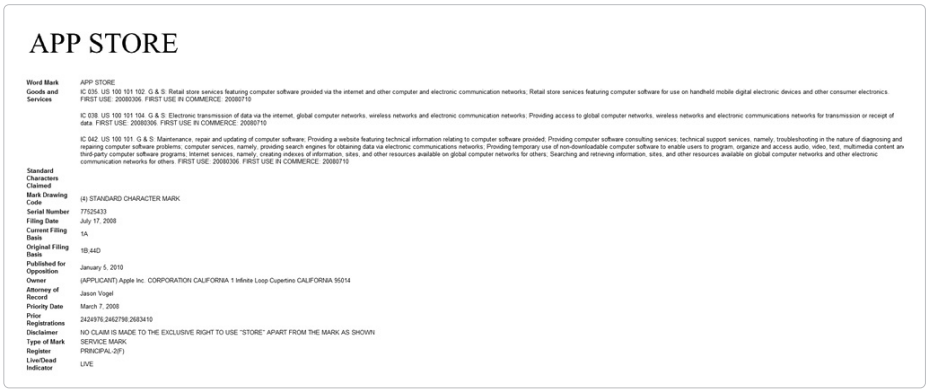

APP STORE

| | |
|---|---|
| Word Mark | APP STORE |
| Goods and Services | IC 035. US 100 101 102. G & 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computer software provided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puter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computer software for use on handheld mobile digital electronic devices and other consumer electronics. FIRST USE: 20080306. FIRST USE IN COMMERCE: 20080710<br><br>IC 038. US 100 101 104. G & S: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via the internet, global computer networks, wireless network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Providing access to global computer networks, wireless network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for transmission or receipt of data. FIRST USE: 20080306. FIRST USE IN COMMERCE: 20080710<br><br>IC 042. US 100 101. G & S: Maintenance, repair and updating of computer software; Providing a website featuring technical information relating to computer software provided; Providing computer software consulting services; technical support services, namely, troubleshooting in the nature of diagnosing and repairing computer software problems; computer services, namely, providing search engines for obtaining data via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Providing temporary use of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to enable users to program, organize and access audio, video, text, multimedia content and third-party computer software programs; Internet services, namely, creating indexes of information, sites, and other resources available on global computer networks for others; Search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sites, and other resources available on global computer networks and other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for others. FIRST USE: 20080306. FIRST USE IN COMMERCE: 20080710 |
| Standard Characters Claimed | |
| Mark Drawing Code | (4) STANDARD CHARACTER MARK |
| Serial Number | 77525433 |
| Filing Date | July 17, 2008 |
| Current Filing Basis | 1A |
| Original Filing Basis | 1B,44D |
| Published for Opposition | January 5, 2010 |
| Owner | (APPLICANT) Apple Inc. CORPORATION CALIFORNIA 1 Infinite Loop Cupertino CALIFORNIA 95014 |
| Attorney of Record | Jason Vogel |
| Priority Date | March 7, 2008 |
| Prior Registrations | 2424976,2462796,2683410 |
| Disclaimer | NO CLAIM IS MADE TO THE EXCLUSIVE RIGHT TO USE "STORE" APART FROM THE MARK AS SHOWN |
| Type of Mark | SERVICE MARK |
| Register | PRINCIPAL-2(F) |
| Live/Dead Indicator | LIVE |

〈미국상표청 'APP STORE' 서지사항 검색 발췌 화면〉

먼저 미국에서 애플이 'APPSTORE' 상표권을 확보에 성공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았다. 미국상표청(http://tess2.uspto.gov/)의 검색창에서 owner name에 'apple'과 mark index에 'store'를 'and' 조합으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APP STORE'가 현재 미국상표청에 출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PP STORE'의 법적 상태는 2008년 7월 17일에 출원을 완료한 후 2009년 12월 1일자로 공고결정(Publication) 후 2010년 7월 7일자로 이의신청(Opposition)이 개시된 상태로 나타나 있다.[1] 이의신청인이 누구인지는 미국상표청 웹사이트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MS사 또는 MS사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가진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출원 후부터 공고결정 전까지 많은 법적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어쨌든 공고결정이 한 번 난 것으로 보아 미국상표청은 애플의 손을 먼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애플이 'APP STORE'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상표법은 '속지주의'라는 것을 취하고 있어 미국에서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별개로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상표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는 없다. 철저히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APP STORE'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따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조사 결과, 애플은 다음과 같이 'STORE'를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표는 하기 표 중 5번 'APPSTORE(띄어쓰기 없는 형태)'와 6번 'APP STORE(띄어쓰기가 있는 형태)'이다. 5번과 6번은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상표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5번과 6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아야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다음 글에서는 애플의 'APP STORE'와 'APP STORE'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겠다.

1)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를 출원하고 나면 그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독점시킬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관에 의한 1차 심사가 완료된 상표에 대해서는 출원공고결정을 내린다. 출원공고 결정 후에는 공중에게 심사를 맡겨 출원한 상표의 등록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출원한 상표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비로소 등록결정이 되며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완전히 자신이 독점하는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번호 | 견본이미지 | 출원(국제등록)번호<br>출원(국제등록)일자 | 공고번호<br>공고일자 | 등록번호<br>등록일자 | 우선권주장번호<br>우선권주장일자 | 상태 | 상품분류 | 도형코드 | 출원인 |
|---|---|---|---|---|---|---|---|---|---|
| 1 | ITUNES STORE | 920653<br>(2007.02.01) | 4120080054742<br>(2008.09.09) | | 1311676<br>(2006.08.03) | 공고 | 38 41 42 3 5 | | 애플 인크. Apple Inc. |
| 2 | APPLE STORE | 973841<br>(2008.03.11) | 4120090039029<br>(2009.09.02) | 4101916710000<br>(2009.11.13) | 77388365<br>(2008.02.04) | 등록 | 37 41 42 | | Apple Inc. |
| 3 | APPLE STORE | 883222<br>(2006.02.27) | 4120070012379<br>(2007.02.28) | 4101478940000<br>(2007.04.24) | | 등록 | 35 | | Apple Computer, Inc., |
| 4 | IBOOKSTORE | 4520100001847<br>(2010.05.03) | | | 41873<br>(2010.01.25) | 출원 | 09 35 | | 애플 인크. |
| 5 | APPSTORE | 909450<br>(2006.12.13) | | | 78907865<br>(2006.06.14) | 포기 | 42 35 | | Apple Inc. |
| 6 | APP STORE | 4120080024409<br>(2008.09.11) | | | | 거절 | 38 | | 애플 인크. |

〈애플이 보유한 'STORE' 포함 상표 리스트-www.kipris.or.kr 발췌 화면〉

우선, 상기 5번과 6번의 최종 상태는 5번은 '포기' 상태로 나와 있고, 6번은 '거절' 상태로 나와 있는데 '포기'라는 것은 출원인 스스로 절차를 종료한 의사를 밝힌 것이며 '거절'은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포기'나 '거절'은 법적으로 선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후에 누군가 'APPSTORE'를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해도 포기되거나 거절된 상표로 인해 거절될 염려는 없다. 5번의 경우는 애플이 마드리드 국제등록출원을 통해 2006년 12월 13일자로 출원을 진행했으며, 미국출원 No.78907865 'APPSTORE'을 기초로 하였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출원은 여러 국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데 기초출원이 소멸(거절결정되거나 포기된 경우 등)될 경우 다른 나라를 지정한 출원도 함께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기초출원의 법적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상표청에서 No.78907865 'APPSTORE'를 검색한 결과, 이 상표는 2006년 6월 14일에 출원되어 2008년 12월 5일자로 포기되었는데 그 사이 미국상표청은 출원인에게 수 차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가 2008년 7월 24일자로 공고결정을 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며(아마도 미국 APP STORE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인일 것이라 추측됨) 그 후 애플은 이 상표는 포기하였다. 미국에서 이 상표를 포기함에 따라 한국에서 출원한 마드리드 출원인 5번 상표도 자동적으로 소멸하였는데 5번 상표는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 절차도 종료하게 되었다. 애플이 5번 상표를 포기함과 동시에 'APPSTORE'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일견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8년 7월 17일, 미국에 'APP STORE (No.77525433)'을 출원하였고, 2008년 9월 11일 동일한 상표 'APP STORE'를 우리나라에 개별로 출원한 것으로 보아 'APP STORE'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달리 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 출원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애플이 'APP STORE'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부는 그 거절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의 거절사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5번이 소멸되기 전에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5번 상표에 대해 가거절 통지서를 보낸 사유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심사관은 "'APP STORE'는 컴퓨터 프로그

APPSTORE

| | |
|---|---|
| Word Mark | APPSTORE |
| Goods and Services | (ABANDONED) IC 042. US 100 101. G & S: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featuring computer software in the field of business project management, business knowledge, information and asset management,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ales, marketing, e-commerce, electronic messaging, and web site development |
| Standard Characters Claimed | |
| Mark Drawing Code | (4) STANDARD CHARACTER MARK |
| Serial Number | 78907865 |
| Filing Date | June 14, 2006 |
| Current Filing Basis | 1B |
| Original Filing Basis | 1B |
| Published for Opposition | August 26, 2008 |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0909450 |
| Owner | (APPLICANT) salesforce.com, inc. CORPORATION DELAWARE The Landmark @ One Market Street #300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5 |
| Attorney of Record | Noel M. Cook |
| Type of Mark | SERVICE MARK |
| Register | PRINCIPAL |
| Live/Dead Indicator | DEAD |
| Abandonment Date | December 5, 2008 |

(2) Regarding all the designated goods, the mark lacks the distinctiveness to enable consumers to recognize whose goods it indicates under the Trademark Act, 6(1)(vii).

Where a mark is used by many people or where it is unfair to grant exclusive rights to one person for a mark in view of public interest, the mark shall be regarded to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marks stipulated in Article 6(1)(vii) of Korean Trademark Act, that does not enable consumers to recognize whose goods it indicates under the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Article 12.

The term "APPSTORE", which has the meaning of a place for selling 'APP', a kind of a computer program, does not seem to have any distinctiveness in light of social common view, and it is unfair to grant exclusive rights to one person for the mark in view of public interest.

Accordingly, it is decided that the proposed mark "APPSTORE" lacks the distinctiveness to enable consumers to recognize whose goods it indicates.

〈국제출원 No.909450 APPSTORE 가거절 통지서 중 일부 발췌 화면〉

램을 일컫는 'APP'을 판매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6번 상표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거절이유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다음은 6번 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중 일부 내용이다.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명 칭 애플 인크. (출원인코드: 519990306386)
주 소 미합중국 95014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인피니트 루프 1
대 리 인 명 칭 특허법인화우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0-6 남강빌딩 11층(특허법인 화우)
지정된변리사 권성택 외 1명

출 원 번 호 41-2008-0024409
상 품 ( 서 비 스 업 ) 류 제 35 류를 포함한 3개류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답변, 소명)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보정·보완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이유 ]

1.이 출원서비스표는 "APPSTORE"는 'app(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 'app(컴퓨터 프로그램) 기억장치' 라는 뜻으로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성질(용도,제공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하며, " APP "는 컴퓨터등의 응용프로그램으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사용하여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상표출원 No.41-2008-0024409 APP STORE 의견제출 통지서 중 일부 발췌〉

즉, 상기 5번에서의 거절이유와 동일한 이유로서 'APPSTORE'는 역시 'APP(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이라는 뜻으로 직감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APPSTORE'는 다수인이 널리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을 허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6번 상표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09년 12월 1일자로 거절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며, 애플 측은 이에 대해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미국의 경우 'APP STORE'에 대해 미국상표청은 공고결정을 내려 주었고 이에 대해 2010년 7월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이며, 오늘 기사에 따르면 MS사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APP STORE는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표장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기 'APP STORE'에 대해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청구가 제기된 상태라 'APP STORE'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위해 애플은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현재 호주와 네덜란드에서는 'APP STORE'에 대한 최종 등록이 마쳐진 상태라 각국마다 'APP STORE'를 애플이 독점 보유하게 될 지 여부는 그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인데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앱스토어'는 특허청이 바라본 대로 '앱(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공간, 가게' 정도의 의미로 쉽게 인식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일반수요자들도 '앱스토어'가 애플의 상표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상호를 붙여 '네이버 앱스토어', '아이디어앱스토어', 'DAPPSTORE' 등의 형태로 출원을 하고 있으며 웹상에서도 '앱스토어'라는 말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에서의 'APP STORE'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지에 따라 한국에서의 심판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IT 업계는 MS사가 제기한 '앱스토어' 미국 상표 분쟁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 11

# 특허분쟁과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발명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국제적 성격을 띠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므로 최근 삼성-애플 특허분쟁에서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의 법정에서 다발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허분쟁에서는 강력한 특허가 있어야 하며 강력한 특허는 종업원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으로부터 가능하다. 강력한 특허는 곧 가치가 큰 직무발명을 말한다. 강력한 특허를 위해선 직무발명자에게 발명의욕을 고취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 준 효
김준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세계적 특허분쟁에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이므로 결국 '기술적 사상'이다. 발명의 완성에 의해(전 세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 사상(발명)이 세계 각국이 개별적으로 정한 특허요건을 만족하면 국가별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발명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나 특허권에는 '특허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최근의 대형 특허 분쟁은 세계 각국에서의 법정에서 다발적으로 싸움이 벌어져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최근 삼성-애플 간의 특허분쟁에서 세계 각국(2011. 10. 24. 현재 9개국)의 법정에서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대형 특허분쟁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기업이 한 당사자가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 실력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대형 특허분쟁에서는 강력한 특허가 필요하다

삼성-애플 특허 분쟁 같은 큰 특허분쟁이든 일반적인 규모의 특허분쟁이든 공격자는 공격무기로써 '강력한 특허'가 필요하다. 강력한 특허인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는 대체가능성이다. 특허공세를 당하는 자는 당해 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거나 당해 발명은 특허요건의 하나인 진보성 등이 없어 무효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방어자 측의 논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특허가 요구되는 것이다. 삼성-애플 간

의 특허분쟁에서도 양 당사자는 각 10건 이내의 강력한 특허로 맞서고 있다. 그리고 2009. 10. ~ 2011. 6. 기간 동안의 노키아-애플 특허분쟁에서는 노키아는 특허 10건, 애플은 특허 13건으로서 상호 공격하여 종국에는 합의하였고 상호 제소를 취하하였다. 이처럼 특허분쟁에서는 10건 내외를 넘지 않는 특허들로써 승부를 가린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강력한 특허 이외에는 공격무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면 강력한 특허는 어디서부터 가능할까? 강력한 특허 역시 종업원이 직무상 완성한 발명 즉 '직무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직무발명과 관련한 종업원 발명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부터 강력한 특허는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강력한 특허를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분쟁에서는 강력한 특허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직무발명자에게 발명의욕을 고취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발명의 완성으로 인한 모든 권리(이를 '발명자권'이라고도 함)는 처음에 발명자에게 속한다는 원칙(발명자주의)이 있고 따라서 종업원 발명자가 이 발명자권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으나 회사에 양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발명자측은 발명자권을 회사에 양도한다. 이 양도에 의해 종업원 발명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다.(단, 2006. 9. 3.이전에 양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구 특허법 제40조가 적용되나 취지는 유사함)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 · 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서와 같이, 회사와 종업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보상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보상한다면 그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서와 같이 그러한 규정이나 계약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는 아래 공식에 의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다.

가. 타사실시의 경우(처분보상금)
보상금(C)=수익(a+b)×발명자들 공헌도×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
*수익=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a=로열티수입, b=크로스라이센싱의 경제적 이익)
(*발명자들 공헌도=1-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이 공헌한 정도)

나. 자사실시의 경우(실시보상금)
보상금(C)=매출액×독점권기여도×가상실시료율×발명자들 공헌도×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
*매출액×독점권기여도×가상실시료율=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위 공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 상황 예를 설정한다.

**상황 예:**

A회사(종업원수: 400명)의 연구원 갑, 을, 병, 정 등(4인 모두 입사동기로서 입사일은 2006.1.1.이며, 입사 시에 발명을 완성하면 완성한 발명을 회사에 양도할 것을 미리 약정하였음)은, A회사의 2008.6.1.자 지령에 의해 2008.7.1.부터 발명 Z등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공동연구의 결과 갑, 을은 2009.7.1. Z발명을 완성하였고, 병, 정은 2009. 8.1.에 Y발명을 완성하였다. 갑, 을은 Z발명을 A회사에 2009. 9. 1.에 양도하였다. 병, 정은 Y발명을 A회사에 같은 날에 양도하였다. A회사는 Z, Y 발명에 대하여 2011. 1. 1. 특허등록을 하였다. A회사는 Z발명은 타사에 라이센싱하였는데 존속기간만료일까지의 장차 얻을 로열티까지 합하여 50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A회사는 Y발명은 자시실시를 하고 있는데 존속기간만료일까지 모두 1,0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계산:

(재판부의 재량판단에 의해 독점권기여도 0.5, 가상실시료율 3%, 발명자(들) 공헌도 10%로 인정됨을 전제로 함.)

발명자 갑, 을에 대한 보상금 : 50억 원 × 10% = 5억 원

발명자 병, 정에 대한 보상금 : 1,000억 원 × 0.5 × 0.03 × 0.1 = 1억 5천만 원

우리나라에서는 80여 건으로 추정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공식에서 '발명자(들) 공헌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대체로 '발명자(들) 공헌도'를 한국의 판례들은 3~30%로 인정하며, 일본의 판례들도 비슷하다.

## 특허분쟁과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가치가 큰 직무발명을 창출할 수 있고 이 가치가 큰 직무발명을 특허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는 보상의 금액이 얼마냐의 문제이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나, 이 규정이 기업이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많이 지급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필자는 '적정한 보상금'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적정한 보상금'의 액수는 노사 모두의 만족과 화합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노사 간에 서로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노사대립구조 하에서의 인식)을 갖는 한, '적정한 보상'이 얼마인가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노사상생'이 가능할 것이고, '적정한 보상'이 얼마인가의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치가 큰 직무발명을 창출하게 하여 노사대립구조를 깨뜨리고 특허분쟁에서도 강력한 공격무기로 활용한다면 이는 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2011. 11

# 패션산업에서 단일 색채상표 가능할까?

## Christian Louboutin S.A. vs. Yves Saint Laurent America Inc.

최근 Christian Louboutin社는 Yves Saint Lauren社에 구두 외부밑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Yves Saint Lauren社가 이를 거절하자 빨간색 밑창에 대한 상표권에 기초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위 사례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색채는 미를 표현하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요소인데, 경쟁자에게 색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패션산업에서 단색의 색채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색채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명 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인프라팀 선임연구원

### 사건의 배경

1992년 프랑스 디자이너 Christian Louboutin은 빨간색 매니큐어를 구두의 밑창에 칠했다. 이것은 패션계의 오랜 관습과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기존의 검정색이나 베이지색의 구두 밑창에서 벗어나 시각적으로 콧대 높은 여성의 고급 구두로 폭넓게 인식되게 되었다. 디자이너 Christian Louboutin이 설립한 Christian Louboutin(이하 'Louboutin')社는 1992년부터 자사 제품 하이힐의 외창(바깥 밑창)을 빨간색으로 제작하여 계속 판매해 오던 중, 2008년에 이 빨간색 외창을 미국에서 상표로 등록하였다.[1] Louboutin社는 빨간색 외창을 모든 구두에 사용하고 있다.

유명한 가수 겸 배우인 제니퍼 로페즈(Jenifer Lopez)가 "Louboutins (2009)"

〈상표출원서 도면〉

〈루부탱 구두의 예〉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러 인기를 끌었고, 또한 유명한 TV 프로그램 'Sex and the City'의 여배우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가 프로그램이나 시상식에서 자주 애용하는 등 루부탱 구두는 연예인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유명 제품이다. 루부탱 구두는 미국에서만 매년 24만 켤레가 팔리고, 고급 패션 백화점 Barneys의 웹사이트에서 한 켤레에 약 530 달러~4,640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Louboutin社는 2011년에 1억 3천5백만 달러의 구두매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1월, Louboutin社는 Yves Saint Lauren(이하 'YSL')社의 「Cruise 2011 컬렉션」의 3개 구두모델에 자사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빨간색이 사용되어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사용중지를 요청했는데 YSL社가 이를 거절하자 지난 4월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다. YSL社 측은 디자이너 Yves Saint Laurent가 1970년대에 스스로 단색의 구두 밑창이라는 콘셉트를 개발했고, 그 후로 YSL社의 패션라인에 종종 빨간색을 비롯한 다른 단색의 컬러 구두를 선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Louboutin社는 호주의 PeepToe社에도 빨간색 구두 밑창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2] 브라질의 Carmen Steffens社에는 소송을 제기했다.[3] 결국 PeepToe社는 보라색으로 변경하였고, Louboutin社는 호주에서도 상표출원을 하여 현재 심사 중이다.[4]

〈루부탱 구두를 신은 사라 제시카 파커〉

지난 8월 11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Louboutin社가 YSL社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거절했다.[5] 판결문에서 Victor Marrero 판사는 Louboutin社의 상표소송이 패션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약 루비통사가 구두 외창에 사용하기 위해 차이니즈 빨간색을 소유한다면, 다른 디자이너는 또 다른 명도의 빨간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할 것이다. 이것은 색채 전체가 특정인의 소유로 되는, 마치 식민시대에 깃발을 꽂아 땅을 나누어 갖는 것과 같다"

판사는 패션산업에서 색깔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장식적·미적 기능을 하는 필수요소라고 지적하며, 빨간색 구두 외창을 상표로 보호해야 됨을 루부탱社가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패션산업에서 단일의 색채를 상표로 할 수 있나

구두의 빨간색 밑창은 어떤 상표적인 기능을 할까. 단지 장식적이고 미학적인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여성이 구두를 신고 걸을 때 옻칠을 한 빨간색의 번쩍임을 보는 사람마다 그것이 누구의 제품인지 식별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지, 이 구분에 따라 빨간색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Victor Marrero 판사는 디자이너 Louboutin이 빨간색이 "섹시(sexy)"하고 "남의 마음을 끌고(engaging)", "빨간색 루부탱 구두를 신은 여자에게 매

력을 느끼기" 때문에 빨간색을 택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색깔을 칠한 밑창은 장식이며 미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매혹적이고, 눈에 뜨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등, 이런 색채의 기능들은 패션에서 비 상표적인 기능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단일의 색채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인정된 경우로는 Owens-Corning社의 핑크색 유리섬유 절연재(fiberglass insulation)를 들 수 있다.[6] 유리섬유 절연재에 사용된 핑크색은 제품이 Owens-Corning社의 제품이라는 확인 외에는 그 제품에서 핑크색이 주는 다른 기능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John Deere社는 자사의 농기계 트랙터에 그린색을 상표로 할 수 없었는데 아이오와 법원은 농기계에서 그린색은 기능적이라고 판단했다.[7] 또한 Brunswick社 모터보트엔진의 검은색도 상표로 할 수 없었는데, 모터보트 밖으로 나와 있는 엔진의 색이 검은색일 경우 다른 색일 때 보다 엔진이 더 작아보이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8]

빨간색은 그린색 트랙터나 검은색 보트엔진처럼, 패션산업에서 필수적 기능을 제공하는 색채인 것이다.

## 색채상표 등록 요건

### (1)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우선 색채상표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secondary meaning) [9]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출원인은 색채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주등록(principal register)이 되지 않고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만 가능하다.

사용주의를 취하는 미국은 이처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단색 또는 색채의 조합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허용한다. Owens-Corning社의 유리섬유 절연재(fiberglass insulation)는 오랜 사용에 의해 핑크색 단색의 식별력이 인정되었다. 또한 Qualitex社의 다림판(press-pad)의 금녹색(gold-geen)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었다.[10]

그러나 단일 색채에 대해서는 미국도 초기에는 색채고갈이론(color depletion theory)과 음영혼동이론(shade confusion theory)을 들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색채고갈이론은 특정 색채를 상표로 인정하면 동종업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색채가 고갈된다는 것이고, 음영혼동이론은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인정하면 이 색채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소송이 발생할 경우 판사가 색채의 농담 또는 명암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론이다.[11] 그러다가 1995년 Qualitex社 판결을 계기로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 (2) 기능적 색채

색채가 그 제품에 있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상표로 등

1) Red Sole Mark, No. 3,361,597.
2) www.wwd.com.
3) http://fashion.telegraph.co.uk/columns/belinda-white/TMG8445360/Christian-Louboutin-launches-second-legal-action.html.
4) 호주 상표출원 No.1352410. http://www.mondaq.com/australia/x/142982/Trademark/Louboutin+sees+rouge.
5) 11-2381,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anhattan).
6) In re Owens-Corning Fiberglas Corp., 774 F.2d 1116, 1128 (Fed. Cir. 1985).
7) In re Deere & Co., 7 USPQ2d 1401(TTAB 1998).
8) 35 F.3d 1527, 32 U.S.P.Q.2d 1120(C.A.F.C.1994).
9)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 제2조(f).
10) Qualitex Co. v. Jacobsen Prods.Co., 514 U.S. 159, 166-74, 34 U.S.P.Q.2d(BNA)1161, 1164-67(1995)

록될 수 없다.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기능성 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품 사용에 색채가 불가결한 경우의 실용적 기능성(utilitarian functionality), 색체가 단지 미적 효과를 주는 경우의 미적 기능성(aesthetic functionality), 색채가 제품에 일반적인 경우의 일반적 제품(generic products)의 기준이다.[12)]

Brunswick社 사건에서 모터보트엔진의 검은색은 실용적인 기능을 하진 않지만 엔진의 크기를 더 작게 보이게 하여 경쟁상의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Orange Communications社 사건[13)]에서는 공중전화와 공중전화부스에 쓰이는 노란색과 주황색은 어떠한 조명에서도 다른 색보다 더 잘 보여서 기능적이라 했다. Sabert社 사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의 빛나는 은색(shiny silver look)과 일반 접시의 빛나는 금색(shiny gold look)은 기능적이어서 그러한 색채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14)] 반면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al社 사건에서는 철조망울타리 꼭대기 부분의 빨간색은 비기능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철조망울타리에 빨간색을 추가하는 것이 철조망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5)]

## 맺음말

Louboutin社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여 미국 제2순회법원에 계류 중이다. YSL社 측은 식별력이 없고, 기능적이며, 미국 특허상표청(USP TO)을 기만하여 취득한 Louboutin社 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ouboutin社가 빨간색의 구두 외창이 자사 구두만의 식별력 있는 요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패션산업에서 색채는 사업을 영위하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특정 색채를 어느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기업은 패션의 의도나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없다. 패션산업에서는 이미 로고나 독특한 패턴의 반복, 체크무늬 등이 식별력 있는 상표로 보호되고 있다. 만일 루부탱 구두의 외창이 물방울 모양이나 빨간색 줄무늬였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다.

우리 상표법은 1995년 개정으로 색채가 상표의 구성요소로 결합할 수 있음을 처음 인정하였는데, 이는 색채를 문자, 도형 등 상표의 부수적 구성요소로만 인정하는 것이어서 WTO /TRIPs가 색채의 결합(combi nations of colors)만으로 상표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달라 동일한 보호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 후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단일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16)]은 색체 자체의 출원과 등록적격성에 관한 세부심사지침을 정하고 있다. 상표심사기준 제8조 제16항 제2문은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의 이용과 용도(목적)에 불가결하거나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단일 색채 관련 분쟁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의 상표전략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의 상표전략에서 단일 색채에 의한 상표가 기능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루부탱 구두 사례는 특히 색채의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패션산업의 상표전략에 참고가 될 것이다. 2011. 11

11) 문삼섭, 제2판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4, 95면.
12) 김원오, 색체 자체의 상표로서의 출원 및 등록적격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창작과 권리, 2008년 겨울호(제53호), 48-49면.
13) In re Orange Communications, Inc., 41 U.S.P.Q.2d 1036(TTAB 1996).
14) Sabert Corp. v. Ullman Co., et al, 53 U.S.P.Q.2d 1597 (S.D.N.Y. 1999).
15)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al, Inc. v. Midstates Distributing Co., 235 F. Supp.2d 901, 905-06 (C.D. Ill. 2002).
16) 상표심사기준, 개정 2007. 7. 26, 특허청 예규 제40호.

# 생활 속에서 변화를 꿈꾸는 것이 발명의 시작이다

21세기는 창의력의 시대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대부분 생활 주변에서 시작되고 오랜 연구와 여러 사람들과의 논의와 개선 끝에 나온다. 발명은 과거와 단절된 채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발명이란 찾고 조합하는 것이다. 즉, 문제에 부딪치면 밖에 나가 정보를 찾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그것을 짜 맞추다 보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활 주위를 살피고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조합해, 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김 경 희**
한국여성발명협회 홍보팀장

전 세계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아기곰 푸우가 탄생한지 올해로 90주년이 되었다. 이 귀여운 곰 캐릭터는 1921년 6월 영국 동화작가 앨런 알렉산더 밀른이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이 가지고 놀던 곰 인형을 소재로 만들어졌고 1928년 어니스트 하워드 셰퍼드에 의해 만화로 그려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31년 미국 제작자 스테판 슬레진저가 북미 판권을 인수하면서 퍼즐, 음반, 게임, 인형 등으로 상품화됐고 이후 월트 디즈니가 판권을 인수해 1966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큰 인기를 얻었다. 현재 푸우 시리즈는 전 세계 46개 언어로 번역되어, 38개국에서 캐릭터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미국 포춘지는 "미키마우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캐릭터인 푸우가 연간 벌어들이는 매출이 37억 5천만 파운드(약 6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캐릭터인 뽀로로 역시 전 세계 110개국에 수출되어 연간 8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금액은 소나타급 중형차 3만 3천 판매 실적에 해당한다고 한다.

위의 사례는 이제 제조업의 시대는 가고 창의력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생산수단과 자원이 되어 엄청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경제 사회다.

하지만 푸우처럼 그 아이디어가 의외로 평범하고 가까운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 최고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의 성공에 대해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는 다락방의 살던 쥐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생활 주변에 살아 있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한 오해

2010년 말 미국 CNN에서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선정한 적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아이디어는 불현듯 떠오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의 저자' 스티븐 존슨은 "훗날 혁신이 되는 개념들은 기억 속에서 몇 년간 숙성을 거쳐 탄생한다. 요즘 누구나 사용하는 월드와이드웹(www)의 시작도 연구원들이 사용하던 네트워크였다."고 말했다.

둘째로, '혁신은 큰 기업에서 한다는 것이다. 미국 MIT의 에릭 본 하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개인이 혁신과 발명에 투자하는 비용의 총액이 IT업계 전체가 투자한 비용보다 많다고 한다. 즉 일반 보통 사람의 순수한 호기심과 탐구 열정이 혁신의 중요한 엔진이었다.

셋째로, '혼자 연구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4개 연구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연구원들의 생활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협력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넷째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6억 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하버드대학의 개인 친목 네트워크에서 출발했다.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부분 오랜 연구와 여러 사람들과의 논의와 개선 끝에 나온다. 성공한 발명품들은 모두 세심하게 관찰하고 만들어 보고, 주위의 반응을 보고 또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성공하게 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업 CEO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도서로 추천한 「전략적 직관」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윌리엄 더간 컬럼비아대학 경영대 교수는 "누구도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는 못한다. 단지 창조적 조합을 할 뿐"이라고 했다. 세계 최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로 꼽힌 애플의 스티브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완전 새로운 뭔가를 발명한 것이 아니고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새롭게 조합했을 뿐이라고 했다.

발명은 과거와 단절된 채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명이란 찾고 조합하는 것이다. 즉, 문제에 부딪치면 밖에 나가 정보를 찾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그것을 짜 맞추다 보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활 주위를 살피고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조합해, 그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 찾고 조합하는 창의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발명거리가 보인다. 하지만 머릿속 생각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 창의성의 제1요건은 실행력

아이디어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실용성과 경제성이 가미되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공상이나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국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로저 딘은 창의성의 제1요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제해결 실행력'이라고 답했다. 로저 딘은 예스, 롤링 스톤스 등 세계적 밴드들의 음반 재킷을 그린 영국 최고의 '커버 아트' 스타 작가다. 그가 손으로 그린 원화는 한 점에 30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테트리스' 게임의 로고를 디자인했고 최근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아바타'가 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그는 "인간은 모두 창의성을 갖고 태어난다. 자라면서 창의성이 억압될 뿐이다. 창의성을 억누르는 장애를 없애고 표현하며 실행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기술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술을 아이디어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자신의 창의성을 예술 작품으로 실행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의 말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실행하느냐가 창의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 짓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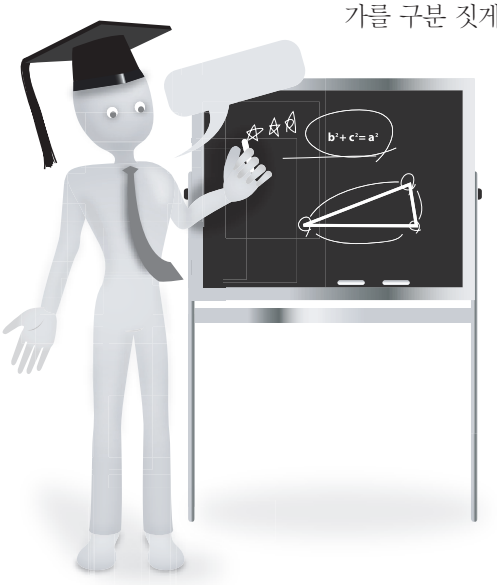


머릿속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발명이다. 아이디어에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해결책으로 바꿔어 놓은 것이 좋은 발명이다. 그래야 그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고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발명가 자신도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생활 속에서 찾아낸 작은 발명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변해, 물건이나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구체화될 때 실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평범한 사람들의 창의성이 자원이 된다

지난 9월 세계 IT산업의 패러다임과 미래 생활양식의 변화를 보여준 '스마트&클라우드쇼 2011' 행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 때 기조연설자로 나선 짐 뉴튼 테크숍 회장은 "시민들이 발명의 주역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민 발명가야말로 새로운 혁신과 상품 개발을 위한 거대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사람들이 구상한 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꿈의 공장 '테크숍'을 설립해 미국 사회에 개방형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은 주인공이다. 테크숍에서는 일정 비용만 내면 대형 공장에서 쓰는 각종 공구와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작업 공간을 쓸 수 있다.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같이 회의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community)도 만들 수 있다. 누구나 1인 제조공장, 1인 기업이 될 수 있다. 테크숍에서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상상하고 꿈꾸던 것을 실현한 '1인 대박 스토리'가 생겨나고 있다.

인큐베이터를 대치할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해 주는 미숙아용 담요는 향후 5년 내 10만 명의 신생아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미국의 최대 가전업체인 GE에서 라이선스를 선뜩 사들였다. 또 '두두(dodo)'라는 아이패드용 케이스는 미국 대통령이 구매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포드자동차,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도 테크숍의 시민 발명가들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디어가 기업에 채택되면 발명가들은 돈도 벌 수 있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산 기업들은 엄청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시민발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활 주변에서 찾아낸 발명, 즉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장해 온 생활발명과도 일맥상통한다.

## 생활발명은 미래의 트렌드다

생활발명은 생활 주변에서 찾아낸 손쉽고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다.

유럽 유명 잡지의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미래연구소를 설립해, 휴렛팩커드, 유니레버, 인텔, BMW와 같은 유명 글로벌 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독일의 저명한 미래 학자이자 트렌드 전문가 마티아스 호르크스(Matthias Horx)는 "미래는 맞춤형 디자인 경제 시대로, 똑 소리 나는 인조인간보다 할머니처럼 여성적이고 편안함을 주는 기술이 각광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뛰어난 기술보다는 편안한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 이제는 기업에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제품과 시장을 만들어 가는 '밖으로부터의 혁신'을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의 전망을 보면서 우리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주장해 온 생활발명은 미래의 트렌드에 딱 맞는다.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활 발명은 앞으로 점점 더 사회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기막힌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발명품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생활 발명이 각광받는 것은 발명이 사회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계속 개량, 개선되기 때문이다. 발명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첨가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현재의 한 가지 아이디어에만 집착하지 말고 열린 시야로 마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 가지의 답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봐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이건 국가건 꿈이 없다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세상을 변화시켜 살기 좋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발명의 시작이다. 미래의 변화를 상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발명하고, 지식재산권으로 확실한 내 것을 만들어 보자.

다락방의 생쥐로부터 만들어진 미키마우스나 장미 넝쿨을 보고 생각해 낸 가시철조망처럼 생활 주변에서 손쉽고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된 생활 친화적인 발명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2011. 11

# 백색부후균을 이용한 토양개량제 및 이를 이용한 폐광지식생복원과 중금속오염정화방법

(주)코엔바이오

## 불편한 진실

2007년, 미국에선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했다.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가 쓴 책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제작은 물론 나레이터로도 참여한 앨 고어는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사람이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환경오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지구가 큰 위기에 빠져있으며,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바쁜 나날들을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한 현대인들이 그 사실을 되새기고 느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불편한 진실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들이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걸 체감하게 해 주었다.

그 해, 엘 고어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넓은 대지와 더 넓은 바다,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대기.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지구를 이룬다.

공기와 물, 흙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순환하며 자정작용을 이룬다. 그렇다. 지구는 원래 스스로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있었다.

인간들의 수가 불어나고, 그들이 문명을 이루어 온갖 유해한 물질들을 배출해나가면서부터 지구의 자정작용은 점차 제 기능을 상실했다. 지구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만 삐그덕 거려도 순식간에 유해물질로 뒤덮이고 만다. 그들이 무사히 스스로의 몸을 정화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더 풍요롭게, 더 편리하게를 외치며 앞으로 전진만 하던 인간들은 지구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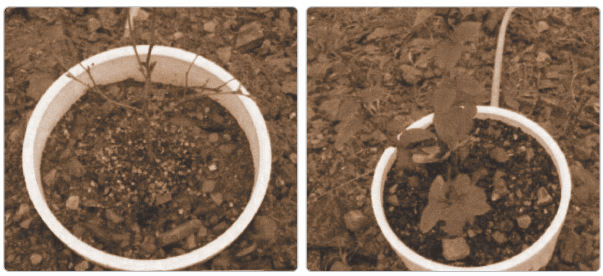

(A) (B)

2000년대를 지나며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지구는 각종 재난과 재해를 일으켰다.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이 피해를 입었고, 오염된 음식물은 잦은 질병을 만들어

냈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와 함께 찾아온 종말론은 결국 우스개소리가 되었지만, 2000년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종말론은 떠돌이 예언자가 아닌, 과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 있다.

지구가 곧 죽을지도 모르며, 결국 인간도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

## 지구라는 이름의 환자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입에 '친환경' 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날마다 뉴스를 통해 지구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제서야 환경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친환경은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되었다.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친환경이다. 오염된 우리의 땅을 정화하고 쓰레기 배출을 영리하게 줄이는 것.

아이비리그의 명문인 Duke University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한 염규진 씨는 교직생활과 정부부처 자문역할을 마치고 코엔바이오라는 회사를 세웠다. 환경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만큼,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던 그였다. 염규진 씨는 환경 분야가 공익적인 기여와 더불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래가 밝은 사업이라고 해도, 당장은 돈 한 푼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염규진 씨는 능력 있는 연구원 몇 명을 데리고 힘겹게 회사를 꾸려갔다.

처음에 그들이 주목한 것은 토양오염이었다. 땅은 우리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그 땅 속에 매립하고 있고 온갖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섞인 오폐수를 버리고 있다.

땅속으로 스며든 오염물질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수백 년이고 그 속에 머물면서 땅을, 흙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오염된 땅에 씨를 뿌리고 온갖 작물들을 키워 수확한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몸속에 들어간다.

코엔바이오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땅은 환자였다. 그들은 자정작용을 상실한 그 환자에게 약을 투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코엔바이오가 주목한 것은 미생물이었다.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과 함께 살아간다. 미생물은 사실 자정작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유해물질을 먹고, 정화시켜 배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생물의 분해 능력을 활용한 토양정화 방법을 구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었다.

코엔바이오는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찾는 한편, 그들의 구상을 명문화하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 소개했다. 코엔바이오가 주목한 것은 한국발명진흥회의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사업' 이었다. 개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중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것을 엄선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코엔바이오는 자신들이 구상한 기술을 문서화시켜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사업' 의 수혜자로 코엔바이오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2010년 1,190만 원이 코엔바이오에게 특허기술 평가비

용으로 지원되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지만, 이제 막 한 걸음 내딛은 코엔바이오로서는 천금 같은 귀중한 지원금이었다.

## 최고의 미생물

특허기술평가를 통해, 자금 확보의 기회를 갖은 코엔바이오는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미생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순수하게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유전자와, 그렇지 못하고 변형된 유전자. 전자는 대부분 훌륭하게 유해물질을 분해하지만 후자는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

코엔바이오는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천연 미생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원들의 책상 앞에 수백 종의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실험 용기들이 쌓였다. 연구원들은 그 미생물 하나, 하나를 일일이 관찰하고 연구했다. 과연 어떤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기에 효과적인지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는 노력 끝에 연구원들은 후보군을 압축했다. 분해에 있어서는 난다 긴다 하는 그 미생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연구원들의 눈에 어떤 균이 보였다.

'백색부후균' 이었다.

이 균은 원래 목재의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및 리그닌 등을 분해하는 사상균의 일종이다. 사상균이란 개별적인 균들이 하나의 군체를 이루어 포자를 형성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버섯이나, 습한 곳에 자주 생기는 곰팡이도 이런 사상균의 하나다.

백색부후균이 한데 모여 겨울우산 버섯, 아교버섯, 구름버섯 등을 만든다.

연구원들은 백색부후균의 분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균이 내뿜는 물질 중에 리카아제, 리그닌 퍼옥시다아제라는 것이 있다. 이 물질들은 악명 높은 '환경 호르몬' 마저 분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분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아주 적은 양으로도 체내의 호르몬작용을 교란시켜서 불임, 기형, 암 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악질적인 오염물질이다.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환경호르몬을 접하고 있다. 커피를 마시는 1회용 종이컵에서부터,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그릇, 어린 아이들이 입에 넣고 물고 빠는 장난감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에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유해함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환경호르몬을 분해해서 없애 버릴 수 있다면?

환경을 지키면서, 우리 몸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코엔바이오는 이토록 강력한 백색부후균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땅에 주입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다 슬러지와 톱밥을 만나게 되었다.

슬러지란 하수처리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이다. 톱밥과 비슷한 물질로 대부분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들은 슬러지와 톱밥에 백색부후균을 접종했다. 두 물질은 완벽하게 서로에게 섞여 들어갔고, 새로운 개념의 토양 개량제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토양 개량제가 우선 투입된 곳은 폐광지이다.

이제는 모든 광물을 퍼내고 그 잔해만 남은 땅. 그곳은 땅속 깊숙이 스며든 금속 성분과 오염물질로 풀 한 포기 나기 힘든 죽음의 땅이었다.

토양 개량제를 그 위에 뿌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개량제가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땅 속의 오염물질을 정화함은 물론, 흙의 질마저 바꾸어 놓은 것이다. 죽음의 땅이,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해 내는 명품으로 탈바꿈 했다.

코엔바이오 연구원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 지구를 치료하는 의사, 코엔 바이오

'백색부후균을 이용한 토양개량제 및 이를 이용한 폐광지 식생복원과 중금속오염정화방법'

이 긴 이름은 2006년 코엔바이오가 출원한 특허의 명칭이다.

코엔바이오는 폐광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오염으로 신음하는 땅을 위해 새로운 토양 개량제를 속속들이 개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하우는 풍부해졌고, 미생물에 대한 지식은 높아져 갔다.

코엔바이오는 토양 개량제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2007년, 그들은 9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가 그야말로 억대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특허가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의 토양 개량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2008년, 코엔바이오는 법인으로 전환, (주)코엔바이오로 새롭게 출발했고, 2009년에는 마침내 매출액 10억을 돌파했다. 총 자산은 24억에 육박했는데 2년 사이에 10억 가까이 불어나 있었다.

아픈 땅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염원이, 회사도 함께 살려낸 것이다.

2010년 코엔바이오는 해외 시장을 향해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토양정화 시장은 2,800억원, 해외는 13조에 달한다. 이 규모는 해가 바뀔수록 점점 커져나갈 전망이다. 그만큼 아픈 땅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코엔바이오는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에 괴로워하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고 그곳 회사와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또한 캐나다의 모 환경회사와는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수질처리와 폐수정화 또한 코엔바이오의 관심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미생물들을 물속에서 번식시켜 빠른 시간 안에 정화시키는 기술을 연구 중이며 일부는 상용화하고 있다.

땅 뿐만 아니라 물까지. 지구라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엔바이오의 꿈이다.

2011. 11

# IP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10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KIPO NEWS
특허청 소식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발명역사 속으로
콩테의 연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건강하게 삽시다
발이 건강해야 온 몸이 편안하다
독자마당
QUIZ
책과의 만남
손자병법
문화산책
김건모 데뷔 2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 Information

# 세계는 지금

## 일본 후생노동성,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통한 의료비 절감 결정

지난 10월 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2년 진료보수 개정에서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 처음으로 발매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현행 신약의 70%보다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신약과의 가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보급을 촉진하고 의료비 절감으로 연결한다는 목적이다.

일본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2009년 9월 20.2%로 나타나, 이는 미국과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의 주 방안이며, 2012년까지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약가(藥價)전문부회에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 가격 검토를 제안하였다. (부회 위원들의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신약의 60% 정도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하나의 신약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 20종이 넘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 수나 가격차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효능이나 효과가 신약과 동등한 상태에서 제조 판매가 승인되는 것으로, 개발비가 들지 않아 약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sankei.jp.msn.com*

## 미국 특허상표청,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을 통한 500번째 특허 허여

지난 10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을 통한 500번째 특허를 General Electric(GE)社의 특허에 허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GE社가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등록한 116번째 특허로, 공기역학적 소형날개를 부착한 풍력발전기기의 회전날개(No.8,029,241)에 대한 특허이다.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환경 기준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11월, USPTO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출원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2009년 12월, 해당 시범프로그램이 실시된 이래 2,5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녹색기술 출원으로서 인증 받음)

통계자료에 따르면, 녹색기술 시범프로그램을 통한 출원은 통상의 심사과정보다 빠른 시일 내에 특허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USPTO가 대체연료, 청정에너지, 녹색기술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USPTO는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축에 대한 노력을 증진함으로써, 추가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유해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E社의 Carl Horton 지식재산 수석변호사는 USPTO가 녹색기술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GE社 및 기타 업체들이 보다 빨리 시장에 기술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uspto.gov*

##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품질 조사 결과 보고

지난 10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속적인 특허품질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USPTO는 2006년부터 USPTO와 이전 해에 업무를 한 실무가, 발명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외부품질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피드백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조사는 심사품질 전반에 대해 중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0%가 넘는 이해관계자들이 심사가 공정하거나 우수하다고 평가함. 이는 2009년 10월 결과보다 높은 수준임
- 2007 회계연도 1분기의 이해관계자들은 심사품질이 더 향상되었다고 24%가 응답하였으나 2011 회계연도 1분기에는 36%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 심사품질의 수준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는 2007 회계연도 1분기에 13%에서 2011 회계연도 1분기에 9%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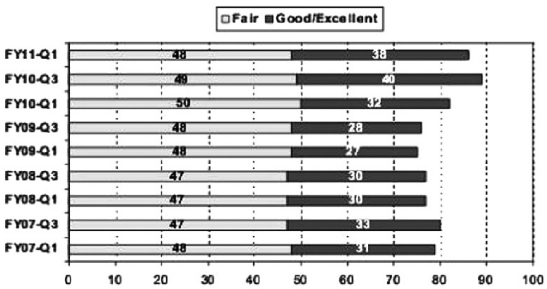


〈표1〉 2011 심사품질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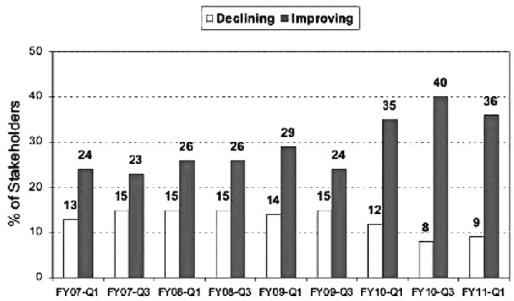


〈표2〉 2011 심사품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출처 http://www.uspto.gov*

##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특허검색 툴 「Ipsum」 개시 발표

지난 10월 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온라인 특허검색 툴인 「Ipsum」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Ipsum은 특허 등록 및 출원서 관련 정보검색 서비스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연구기관 및 특허 변호사,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잠재적 발명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Ipsum 이전에는 요청문서 당 5파운드가 소요되었으며, 배송시간을 감안하면 문서를 수령할 때쯤엔 이미 해당 문서가 쓸모없게 되기도 하였다.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료 서비스인 Ipsum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주고, 전 세계 특허 심사관들 역시 UKIPO의 특허 등록 및 미등록 사유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특허심사 적체현상을 줄임으로써 타국에서 특허처리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영국 기업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Ipsum은 영국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Ian Hargreaves의 보고서("지식재산과 성장", 5월)에 나타난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였고, 이 중

# 세계는 지금

Ipsum은 특허 품질의 개선을 위해서 특허심사 적체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에 대한 조치에 해당한다.

*출처 http://www.ipo.gov.uk*

## 영국 고등법원, Halliburton社의 소프트웨어 특허적격성 인정

지난 10월 5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의 유전 서비스 기업인 Halliburton社의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을 인정하였다.

Halliburton社의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드릴 비트(drill bit)를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과거 Halliburton社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4개의 특허출원을 신청했지만 해당 발명이 "정신적 활동(mental act)"을 수행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특허등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즉, Halliburton社의 발명품은 엔지니어가 자신의 머리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자동화했을 뿐이라는 사유로 특허가 거부되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Birss 판사는 당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상이며, 인간의 사고과정을 뛰어넘는 드릴 비트(drill bit)를 디자인하는 방식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컴퓨터 실행 발명"은 영국에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대한 유럽 특허청(EPO)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영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획득이 용이해졌다는 평가이다. 이것은 Ian Hargreaves의 보고서("지식재산과 성장", 5월)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영국의 관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에 상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http://www.zdnet.co.uk*

## 호주 연방법원, 삼성전자「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지난 10월 13일, 호주 연방법원은 Apple社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양사의 특허권 논쟁이 앞으로 재판에서 해결될 때까지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

Apple社는 지난 7월, 호주에서 아이패드2의 경쟁제품이 될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현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휴리스틱」기술과 「멀티터치」기술이었으나 호주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수직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이고, 「멀티터치」는 스크린을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더라도 이를 각각 인식해 확대·축소와 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9개국에서 벌어지는 약 30건의 소송 중 일부일 뿐이라며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Apple社를 상대로 통신표준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10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 아이피스타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대 표 자 : 정성준
- 업태/종목 : 서비스, 변리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터 1206호
- 전화번호 : 02)508-4997
- 홈페이지주소 : www.ipsta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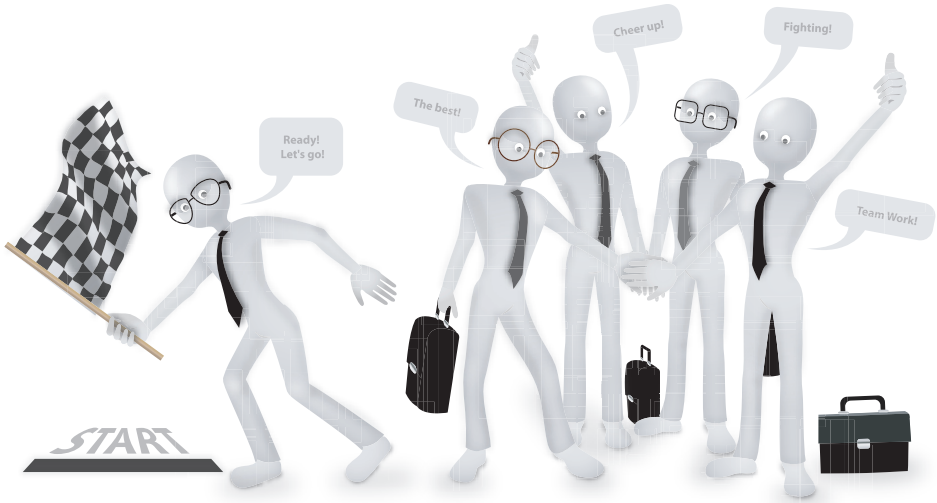

# KIPO NEWS

## 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 2년째 '순항'

특허청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 · 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심사를 한 달 이내에 처리하는 초고속 특허심사제도가 지난 10월 1일에 시행 2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일반 특허심사의 경우 평균 17개월 정도 소요되나, 초고속 특허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 특허심사를 통해 가장 빨리 등록된 건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중소기업의 출원으로 초고속 특허심사 신청 후 11일 만에 특허결정이 되었다.

초고속 특허심사를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다. 2009년 10월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78건에 대해 초고속 특허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특허를 받은 이후 사업화하는 비율은 83%로 전체 특허의 사업화 비율인 43%보다 높은 수준이다.

출원인이 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한 8개 환경 · 에너지 관련법 등에서 인정하는 녹색기술이어야 하며, 둘째,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고, 셋째, 전자출원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녹색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는 2011년 2월 국무총리실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선정한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에 꼽힐 정도로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세계 특허제도 통일 가속화

특허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제도를 통일하기 위한 특허법 조화(Patent Law Harmonization)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제연합(UN)의 지식재산 전문 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총회 기간 중 미국, 일본, 유럽 등 11개 주요 특허 · 상표청들과 연쇄회의를 갖고, 세계 특허제도 통일 및 출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 기간 중에는 각국 특허청들 사이에서 특허법 조화가 중요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이수원 청장 역시 일본, 덴마크, 영국 특허청장 등과 특허법 조화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렇게 특허법 통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미국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 특허법에서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운영중인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선발명주의** : 발명을 한 순서에 따라 특허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제도

** **선출원주의** : 특허출원을 한 순서를 특허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특허청이 채택

또한 이수원 청장은 알베르토 까사도 세르비뇨(Alberto Casado Cerviño) 스페인 특허청장과 지재권 행정 관련 양 청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페루 대표단과는 특허청이 페루 출원인에게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상의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특

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PCT :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약

** **국제조사기관** : 국제출원에 대해 특허 가능 여부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 이제 특허수수료 ATM으로도 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전국 각지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Automated Teller Machine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를 ATM으로 납부할 수 있고, 향후에는 ATM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가 출원료 등 다른 분야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ATM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특허고객들도 ATM을 통해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이용고객 500만 돌파

특허청은 지난 10월 28일로 특허고객상담센터가 서비스 개시 9년 7개월여 만에 이용고객 50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500만 돌파에 앞서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고객감동사례 공모, 특허청 직원 대상 1일 상담사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31일 특허고객상담센터 이용고객 500만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02년 3월 20일 24명의 상담사로 운영에 들어간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는 현재 48명의 전문상담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상담을 하였으나 지금은 2,50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전화상담이 62만 건에 달하였다.

현재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상담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관련 국제출원 전문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써 등록받은 특허권 등의 권리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료미납 고객 등에게 해결방법을 미리 안내하는 '엔젤 콜(Angel cal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특허심판, 더 알기 쉽게

최근 국제 특허분쟁이 가열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공정 · 정확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특허심판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판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심판편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의 실무절차에 대한 지침서로서, 특허청 심판관 외에 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도 심판의 절차를 알려주는 필수품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법령개정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공정 · 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심결문을 통일화하고,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KIPO NEWS

## 특허청, 내년 예산(안) 지식재산강국 도약에 역점을 두고 편성

특허청은 특허 · 상표 ·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올해(3,633억 원)보다 11.6% 늘어난 4,054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고품질 심사 · 심판서비스 제공 및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 등 특허청 주요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2,219억 원으로 2011년도보다 8.1% 증가한 규모이다.

## 특허청,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사업 예산 대폭 늘린다

특허청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의 특허행정 정보화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2012년도 특허청 정보화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의 442억 원 보다 1.1% 감소한 4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사업 예산은 2011년 44억 원에서 27.3% 증가한 5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사업 예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 단독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정보화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발주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대규모 정보화사업은 대 ·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사업 수주에 유리하도록 평가배점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도 현재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2012년도 중소기업 대상 정보화사업 예산의 주요내역은 PC · 프린터 전산장비 구매사업에 14억 원, 특허데이터 품질 강화 사업에 12억 원, 국제특허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 특허넷 일반행정시스템 운영위탁 사업에 4억 원 등이다.

##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에 앞장설 대학 육성

최근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특허청은 대학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은 대학에서 지식재산 교육을 전담할 교수를 확보하여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지식재산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과 사회에 공급하고, 아울러 아직 초기단계인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우수한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다른 대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으로 금년에 3개 대학을 선정하여 각 연간 1억 5천만 원 내외를 5년간 지원(총 7억 5천만 원이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내년부터는 5개 대학씩 3년간 총 1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 특허청 도서관, 대국민 열린공간으로 새단장

특허청은 청내 도서관의 이용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 일반 국민들이 소장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946년 설립된 특허청 도서관은 심사관이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필수문헌과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소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문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에는 국내외 정기간행물 8만여 권과 단행본 3만여 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온라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도서관을 개가제(開架制)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가 서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볼 수 있으며, 사서(司書)가 이용자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다.

이용자는 도서관 홈페이지(library.kipo.go.kr)를 통해 자료를 검색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복사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허청의 최신 간행물 목록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 한국이 만든 지재권 e-러닝 콘텐츠 중남미 간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1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어판 IP 파노라마(panorama) 출시행사를 가졌다.

IP 파노라마는 한국 특허청과 WIPO,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IP, Intellectual Property) e-러닝 콘텐츠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 **스토리텔링** : 음성(voice)과 행위(gesture)를 통해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IP 파노라마는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러운 학습 참여 및 흥미를 유도한다.

총 13개 주제로 구성된 IP 파노라마는 중소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중요성, 상표와 디자인, 발명과 특허와 같은 익숙한 주제부터, 영업비밀, 기술 라이센싱,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재권 프랜차이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주제까지 다루고 있다.

2007년 영문판 IP 파노라마를 개발하여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특허청은 2009년 UN 공용어인 아랍어판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세계 4억 5천만 여 인구의 스페인어권 사용자를 위해 스페인어판을 개발해 이번에 출시했다.

이에 따라 IP 파노라마는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재권 e-러닝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제공 특허청

# KIPA NEWS

## 김광림 의원, 우리회 신임회장으로 취임

### 2011 임시이사회 통해 선임

우리회는 지난 10월 20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김광림 의원(63 · 사진)이 제16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14회) 후 기획 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영남대 석좌교수, 세명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안동)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우리나라 발명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회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재권의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가 특허강국으로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발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광림 신임회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김광림 신임회장 약력

■ 학력

- 안동교육대학 졸업
-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경력(최신순)

-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안동시)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경제 · 금융 · 예산 총괄)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비상경제상황실 거시경제 · 일자리 팀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운영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계수소위 위원 · 간사
-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세명대학교 총장/영남대학교 석좌교수
- 재정경제부 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 특허청장(제16대/ '02.2.5 ~ '03.3.3)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 경제기획원 예산실 심의관 · 총괄과장 · 정책과장
- 행정고시 합격(14회)

## 우리회, 사업지원본부장에 오승택 씨 선임

우리회는 지난 10월 5일, 오승택(50 · 사진) 전 운영지원팀장을 사업지원본부장(상임이사)에 선임했다.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은 연세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법학박사 수료)했으며,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산업재산권법 전공으로 연수했다.

'88년 우리회 입사 후 발명진흥사업화팀장, 특허기술사업부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객원교수, 올해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 약력

■ 학력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학과 법학박사 수료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학과 졸업(석사)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산업재산권법 연수
- 미국 University of NewHampshire, Franklin Pierce Center 산업재산권법 연수
- 수원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박사
-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 안동고등학교

■ 경력
- 중소기업청 기술이전협력위원회 위원('98)
-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객원교수('06)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07)
- 태국정부 부총리 고문('08)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11) 등

■ 수상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99), 산업포장('10)

■ 저서
- 특허법(도서출판 박문각, '11)

## 제15회 CIPO 조찬세미나 개최

### 중재 · 조정을 통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 발표

우리회는 지난 10월 7일 오전 7시, 강남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제15회 CIPO(지식재산최고책임자)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 및 최종협 부회장을 비롯, 기업임원 등 총 57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성전자 안승호 부사장(KINPA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온 WIPO 중재조정센터 민은주 팀장은 WIPO 중재조정센터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 · 조정제도 소개 및 국제 특허라이센싱 · 침해분쟁, 소프트웨어, 상표분쟁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CIPO 조찬세미나는 매년 정기적인 모임(격월)을 갖는 행사로, 기업 경영진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IP 경영 확산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 KIPA NEWS

## 우리회 창립 38주년 기념식 개최

### 장기근속직원 공로패 수여

우리회는 창립 38주년(10월 18일)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7일 오전 9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장기근속(10년/20년) 직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어 상임이사가 된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이번 창립기념식은 우리회의 성장에 기여한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우리회를 이끌어갈 전 직원에 대한 격려의 시간이 마련돼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장기근속한 직원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 성명 | 팀명 | 직위 |
|---|---|---|---|---|
| 근속20년 | 1 | 이경표 | 창의인재육성팀 | 부 장 |
| | 2 | 윤종철 | 사업화지원팀 | 과 장 |
| | 3 | 김현태 | 산업인력양성팀 | 과 장 |
| 근속10년 | 4 | 민봉기 | 사업화지원팀 | 부 장 |
| | 5 | 김현웅 | 강원지회 | 과 장 |
| | 6 | 이은성 | 창의인재육성팀 | 과 장 |
| | 7 | 서인철 | 지역지식재산팀 | 계 장 |
| | 8 | 백상운 | 정보화지원T/F팀 | 계 장 |
| | 9 | 김정아 | 교육기획팀 | 계 장 |

## KIPA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지난 10월 1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서울연탄은행을 방문, 불우가구 및 독거어르신들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탄을 기부하고, 배달하는 봉사를 실시했다.

KIPA 사회봉사단 최종협 단장(부회장)은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문경 봄마을 요양원에 치매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우리회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 개최

우리회는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홈커밍 데이(Homecoming Day)'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행사에는 이태섭 · 민경탁 전 부회장을 비롯해 퇴직 및 현 임직원 60여 명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OB와 YB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의 환영사, 이태섭 전 부회장의 답사, 그리고 왕연중 전 이사의 발명동우회 활동사항 브리핑, 선후배간의 감사패 및 축하패 전달식이 있었다.

2부에서는 우리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회상하며, 만찬 및 담소를 나누었다.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회가 지식재산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아울러 "임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와 도전을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영동전통시장 상인회 및 회원사의 산업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KIPA NEWS

## 한국, 독일국제발명전시회서 금상 5개 등 26개 수상

우리회는 지난 10월 30일 폐막된 '2011 독일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우리나라가 금상 5개, 은상 4개, 동상 5개, 특별상 12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상 수상자는 진생사이언스(진세노사이드 Rg5를 함유하는 항암제 조성물), 한국전력공사(애자 점검 모듈 및 그 구동방법, 애자 점검장치 및 방법, 전력구 내부표면 열화검사장치 및 열화검사방법), 우종욱(곡물 로스터 및 로스팅 제어방법), 김용오(스팀밸브를 구비한 테이블 세척기) 등 5명이다.

은상은 간편 조리기(조이쿡 박준규), 세척제를 겸비한 수압형 다목적 세척장치(유완기),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박남영), 난수를 이용한 비밀번호 변경 타입의 전자식 잠금장치 및 제어방법(김지영) 등이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수상자 명단

| 번호 | 권리자명 | 발명(고안)의 명칭 | 수상결과 |
|---|---|---|---|
| 1 | 박준규(조이쿡) | 간편 조리기 | 은상 폴란드 발명협회특별상 |
| 2 | 유완기 | 세척제를 겸비한 수압형 다목적 세척장치 | 은상 우크라이나 발명협회 특별상 |
| 3 | (주)진생사이언스 | 진세노사이드 Rg5를 함유하는 항암제 조성물 | 금상 |
| 4 | 주태수 | 엘이디 가로등 및 보안등 냉각 장치 | 동상 |
| 5 | 한국전력공사 | 애자 점검 모듈 및 그 구동방법, 애자 점검 장치 및 그 방법 | 금상 루마니아 발명협회 특별상 |
| 6 | 한국전력공사 | 전력구내부표면열화검사장치 및 전력구내부표면 열화검사방법 | 금상 |
| 7 | 박남영 | 자동차용 안전벨트 | 동상 |
| 8 | 박남영 | 높이조절이 가능한 싱크대 | 은상 |
| 9 | 김덕수 | 자동차용 가속 표시등 | |
| 10 | 실버레이 | 자가발전장치 결합체 및 이를 이용한 발전시스템 | 동상 |
| 11 | 우종욱 | 곡물 로스터 및 로스팅 제어방법 | 금상 |
| 12 | (주)싱크업 | 시, 청각 자극을 제공하는 인지능력 향상 장치 | 동상 앙골라과학기술부특별상 러시아과학기술부특별상 |
| 13 | 오세기 | 행거의 조명, 음향 표시장치 | 마케도니아 특허청 특별상 |
| 14 | (주)강앤박매디컬 | 척추고정용 임플란트 및 이의 제조 방법 | 마케도니아 특허청 특별상 |
| 15 | 김범수 |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겸비한 무선충전 시스템 | 이란발명협회 특별상 |
| 16 | 김지영 | 난수를 이용한 비밀번호 변경 타입의 전자식 잠금 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 | 은상 |
| 17 | (주)두연테크 | 공기 살균탈취이온 발생장치 | 동상 IFIA 그린인벤션상 |
| 18 | 메디소스플러스(주) | 경부 플레이팅 시스템 | |
| 19 | 황은미 | 팝업북 거치대가 포함된 오르골 장치 | |
| 20 | 정성하 | 분유 디스펜서 | 폴란드 발명협회특별상 |
| 21 | 최용국 | E.L(전계발광체)쉬트를 이용한 문자 · 기호 · 캐릭터형광 센서전등스위치 | IFIA 그린인벤션상 |
| 22 | 김용오 | 스팀밸브를 구비한 테이블세척기 | 금상 |
| 23 | 기해경 | 콘센트 | IFIA 그린인벤션상 |

# 콩테의 연필

부러지지 않고 오래 쓰는 연필은 없을까?

## 발명역사 속으로

연필의 역사는 대체로 16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화된 것은 19세기 들어서부터이다. 그리고 연필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795년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화가인 니콜라 자크 콩테(Nicola Jacques Conté, 1755~ 1805)에 의해서였다.

니콜라 자크 콩테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모처럼의 햇빛을 즐기고 있었다. 정말 평화로운 한때였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공원 한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자만은 예외였다. 그는 얼굴을 심하게 일그러트린 채 아주 큰소리로 짜증을 내고 있었다.

'이런, 또 부러졌군! 이래서야 스케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는 몹시 화가 난 듯, 손에 들고 있던 숯덩어리를 내던졌다. 당시에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숯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콩테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흐음……, 이런 방법이 있었군!'

콩테는 독일 콘라트 폰 게스너의 논문을 읽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공원에서 스케치를 한 그날 이후로 줄곧 새로운 미술도구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콘라트의 논문에서 흑연을 넣어 필기구로 사용했다는 대목에 흥미를 느꼈다.

'흑연을 이용한 필기구라……, 그것 정말 괜찮군! 미술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필기도구로 쓸 수도 있겠어.'

그는 곧바로 실험에 착수했다. 그의 작은 화실이 연구실로 이용되었다. 콩테는 우선 심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흑연을 모아서 막대 모양으로 만든 다음 여러 날을 말려 보았으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기에는 부적합하였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흑연에 일정한 강도를 주는 일이었다. 그는 매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과는 항상 실패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콩테는 저녁식사 도중 무심결에 접시를 만져 보았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접시를 만지는 순간 문제의 해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흙을 불에 구우면 이 접시처럼 단단해진다. 만약 흑연을 찰흙과 섞어 반죽해서 굽는다면 어떨까?'

그는 식사를 하다 말고 곧바로 연구실로 달려가 다시 며칠간 실험에만 집중했다. 추측대로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그는 가마에서 검게 빛나는 단단한 흑연 막대기들을 집어냈다. 그는 이것을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의 홈 속에 차근차근 끼워 넣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냈다. 완성된 연필이 탄생된 순간이었다.

이때가 1795년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연필이 전래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일 것으로 추정되며, 국산연필은 1946년 대전에서 처음 생산되었다.

콩테의 연필(1795)

왕연중 _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저서 중에서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 Namwon
## 전라북도

## 남원지리산 고로쇠수액

고로쇠 수액은 고로쇠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액을 말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필터에서 나오는 맑고 투명한 물로서 생체수이며, 천연 이온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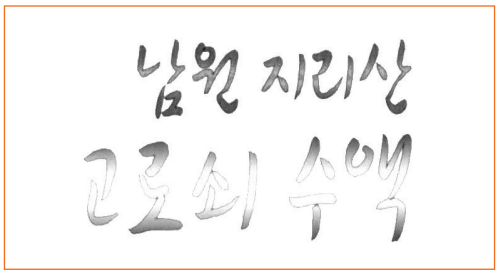


| 상표명 |
남원지리산고로쇠수액

| 권리자 |
지리산 남원고로쇠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52호

| 상품분류 |
제 32류 고로쇠 수액
(남원 지리산에서 채취된 것에 한함)

**연락처**
지리산 남원고로쇠 영농조합법인
063-625-9015 / 080-62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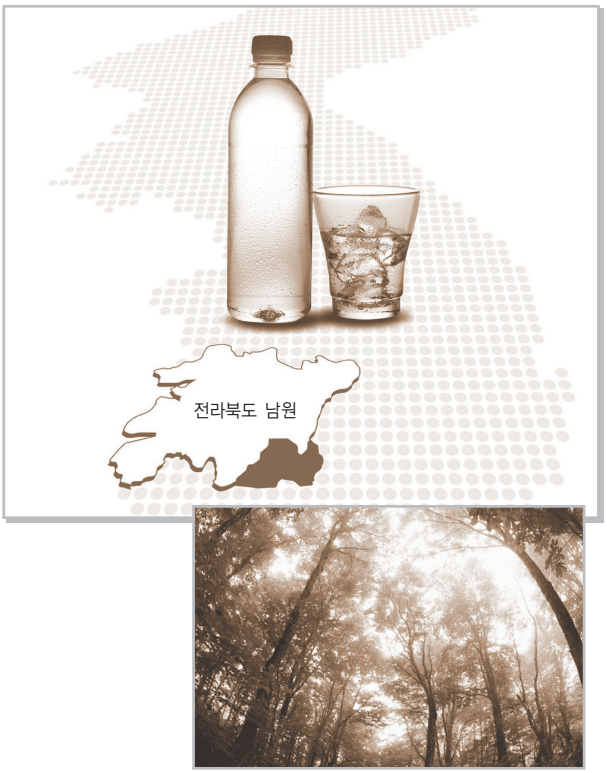


### 1/ 유래

고로쇠 어원은 옛부터 뼈에 이로운 물이라 하여 뼛 골(骨), 이로울 리(利), 나무 수(樹) '골리수'라고 불린 데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고 지리산 남원 고로쇠 수액의 역사는 민간 전래설의 구전에 의하면 삼국시대 때 전투 중 화살에 박힌 나무에서 흘러 내리는 물을 마시자 갈증이 풀리고 힘이 솟아 전투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는 "신라와 백제 전투" 전설과 '반달곰 이야기', '변광쇠 이야기' 등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 2/ 특성

지리산에서도 남원 지역의 고로쇠는 오염되지 않는 청정지역에서 해발 600m 이상 아침 해를 일찍 받고 일찍 저무는 곳의 일교차가 큰 고지대 채취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물량이 모자를 정도로 인기가 좋다.

# Jeongan
# 충청남도

## 정안밤

밤은 예로부터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사양 밤보다 품질이 좋고 단맛이 강해서 우수한 종으로 꼽힌다. 정안밤은 당도가 높고 영양이 풍부하며, 섬유질과 타닌이 많은 알칼리성 전통과실이다.

| 상표명 |
정안밤

| 권리자 |
정안밤생산자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13호

| 상품분류 |
제 31류 밤

**연락처**
정안밤생산자 영농조합법인
041-858-9045~6

### 1/ 유래

정안에서 밤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지리지에 보면 "공주 지역이 밤나무 심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나오고 정안면 월산리에는 102년 된 밤나무도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밤나무이다. 이 지역 밤나무 재배 면적은 197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났고 산이 많아 마땅한 농사거리를 찾지 못하던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심어온 밤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되었다.

### 2/ 특성

정안은 차령산맥 주변에 있어 밤나무 생육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이 형성되어 있어 당도가 높고 고소하며 저장성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고 밤 재배역사가 길어 재배기술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 생산성이 높다. 밤을 강제로 털어 수확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알밤으로 수확하여 맛과 저장성이 뛰어나며 일찍이 육종기술이 발달하여 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뛰어난 신품종을 개발 식재하여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

# 발이 건강해야 온 몸이 편안하다

발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많이 움직이고 제대로 관리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발의 역할과 발 건강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 소개한다.

김소형
한의학 박사

뿌리가 부실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의 뿌리인 발이 건강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성들의 하이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성의 자존심'을 높여준다는 키 높이 깔창이 유행하면서 발 건강을 헤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본 3cm이던 깔창의 높이가 이제는 무려 7~10㎝까지 이르면서 하이힐과 같은 원리로 남성들의 발이 변경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외모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건강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굽이 높으면 허리나 척추에 무리가 가고 무지외반증과 같은 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으며, 뼈와 근육의 균형이 깨져 관절염이나 디스크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 건강의 척도 '발'

흔히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발까지 도달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발의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발은 1㎞를 걸을 때마다 16톤 이상의 압력을 느끼는데, 그 압력이 아래에 몰린 피를 심장으로 내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많이 움직이고 제대로 관리해야 온 몸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가 전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발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지압점만 봐도 알 수 있다. 한방에서는 생리통이 있을 때 발에 있는 조해를 자극해 효과를 본다거나, 아랫배가 많이 나왔을 땐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의 오목한 부위인 태충을, 건망증이나 손발이 차가운 데는 용천을 자극해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한다.

반면, 운동이 부족하고 발에 수독이 쌓이게 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뇌에도 산소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처럼 발은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혹사당하고 있는 신체 부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양말이나 구두 속에 감춰져 있는데다 하이힐이나 키 높이 구두로 온종일 혹사당하면서 다양한 발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발을 쉬게 하자!

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은 무좀이나 습진에 걸리지 않았어도 하루 종일 신발 속에 있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손과 발을 구석구석 깨끗이 씻고 물기가 없도록 발가락 사이까지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습기는 발 냄새의 원인이 되므로 이렇게 발을 깨끗하게 씻고 제대로 말리면 발 냄새는 물론 병증도 없앨 수 있다.

무엇보다 하이힐이나 키 높이 깔창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편한 신발을 신어주는 것이 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평소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면 족탕으로 발을 쉬게 하는 것도 좋다. 족탕은 한의학의 '수승화강 원리'를 이용한 발 목욕법으로, 족탕을 오래하면 수독으로 인한 냉기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하체가 붓는 증상, 물렁살,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인체의 상태를 두한족열(頭寒足熱) 즉,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족탕은 이런 두한족열의 이치에 가장 합당한 셀프치료법이다. 냉족욕과 온족용 모두 발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피로는 물론 수독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족탕은 매일 잠들기 전 15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평소 발에 땀이 많아 고생이라면 맥문동차와 둥글레차를 권한다. 맥문동차는 땀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폐와 기관지를 강화해줘 땀이 나는 것을 막아준다. 둥글레는 예로부터 줄기와 뿌리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했던 것으로, 발에 식은땀이 잘 난다면 둥굴레차를 끓여 수시로 마시면 좋다.

더불어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를 통해 발의 피로를 풀어보자. 먼저, 양쪽 발바닥을 서로 맞대어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비벼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혈행이 좋아지고 수분 밸런스가 조절되어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좋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면, 공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카펫 위에 골프공을 놓고 맨발로 대굴대굴 굴리면서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수시로 자극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발바닥을 구부

> 우리 신체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양말이나 신발 속에 감추어져 있어 자칫 더러운 곳으로 여기게 되는 발. 하지만 평생 동안 우리 몸을 떠받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렸을 때 사람인자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용천혈은 샘물이 용솟음치는 경혈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장기능을 활성화시켜 피로감을 없애준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는 시기에는 발도 거칠어지기 십상이다. 발바닥이나 발뒤꿈치에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지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다가 균열이 생기면서 발뒤꿈치와 발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각질제거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각질을 불린 후 전용 각질제거기로 부드럽게 밀어 각질을 제거한 뒤 보습크림을 듬뿍 바른 다음 랩으로 감싸거나 양말을 신으면 된다.

2011. 11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eldaah7@kipa.org

## QUIZ

1.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고 도입한 조항은?

2. 201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스웨덴 시인은?

3. 비(非)유전적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문화를 뜻하는 말은?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의견

▶ **임경희 독자** _ 모르던 특허의 세계를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영 독자** _ 회사에 다니면서 평소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표권과도 관련이 많은데 특히 시선집중과 zoom in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유주희 독자** _ 평소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아도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발명특허 책자를 읽고 나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과학관련 내용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데, 발명특허 책자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수록된 발명특허 너무 좋습니다.

## 10월호 퀴즈 정답

1. 파우스트(Faust)
2. 순환정전
3. 샤테크

## 퀴즈 정답자

**임경희**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박지영**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유주희** 부천시 원미구 중동

Information

책과의 만남

#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신중하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만난다!**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 〈손자병법〉은 6,200여 자에 불과하지만 간결한 단어에 승패와 운명의 변화 원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압축한 전쟁의 고전이다. 단순히 전쟁의 지혜를 담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하고 있으며, 싸워서 이기는 방법뿐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가르쳐준다. 이 책은 원전에 가장 충실한 〈손자병법〉을 완역한 것으로, 〈사기〉 〈삼국지〉를 완역한 김원중 교수가 완성했다. 고전의 운율과 시적 여백을 살린 번역으로 품격을 높였으며, 춘추전국과 양한, 삼국시대 등 중국 고대의 풍부한 전쟁사례를 수록했다. 원전의 뉘앙스를 잘 살리면서도 이해하기 쉬우며, 시대적 배경의 맥락에서 〈손자병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저 자 _ 손자
출판사 _ 글항아리

공연

# 김건모 데뷔 2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2011. 11. 19 ~ 11. 20

**사람 김건모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김건모 데뷔 2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
**가장 김건모 다운 음악과 무대!**
**광대이기 이전에 가수이자 사람 김건모를 만나보는 시간**

**Be Original... 데뷔 20주년, 김건모 처음으로 돌아가다.**
1992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 이후 '핑계'와 '잘못된 만남'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던 김건모가 2011년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20년의 시간 동안 그를 지켜봐 준 팬들을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사람 김건모'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고자 한다.

**'가장 김건모다운 음악'을 찾는 일**
대중가수로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고, 최고에게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좌절 역시 겪었던 그이기에 이번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무엇보다도 김건모에게 꼭 맞는 옷을 찾고 싶었다. 12집 [KISS] 발표이후 2년동안 '김건모다운 음악', '김건모를 말할 수 있는 음악'을 찾고자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데뷔 20년을 맞는 그가 우리 앞에 13집 앨범을 가지고 돌아온다.

**공연장소 : KBS 부산홀**
**공연기간 : 2011. 11. 19 ~ 2011. 11. 20**
**관람시간 : 120분**
**기 획 사 : 라임기획**

전시

#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11. 9. 24 ~ 11. 22

**모든 길은 세라믹으로 통한다.**
새로운 10년을 다시 여는 201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도자문화를 통해 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시도한다.
CeraMIX Biennale는 국가와 문화와 장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실험하면서 국가 간의 창작교류 활성화를 통해 대중의 참여기회를 넓혀갈 것이다. 또한 미술과 공예, 음악과 공연 예술 등 모든 예술장르와 도자의 융합을 통해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도자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영원성을 이어가는 일이다.

이천과 광주, 여주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가 새로운 시대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행사장은 도자예술의 미래를 담은 테마관광지로 조성되고 있다.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조형예술과 생활문화를 용해하는 상상 실험실이다.

**공연장소 :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공연기간 : 2011. 9. 24 ~ 2011. 11. 22**
**기 획 사 : 한국도자재단**

# 월간「발명특허」
##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 · 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 · 기획 · 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 · 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단,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 광고게재면 | 규 격 | 가 격 | 비 고 |
|---|---|---|---|
| 표지 4 | 칼라 전면 | 900,000 | 부가세 별도 |
| 표지 3 | 〃 | 700,000 | |
| 표지 2 | 〃 | 700,000 | |
| 내지 화보 | 〃 | 500,000 | |
| 내지 흑백 | 흑백 전면 | 300,000 | |

### 우리회 지회 안내

| 지 회 | 지회장 | 사무국장 | 주 소 | 연 락 처 |
|---|---|---|---|---|
| 부산지회 | 박성용 | 김유헌 |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 051-645-9683 |
| 광주지회 | 고정주 | 김 일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br>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 062-954-3841 |
| 강원지회 | 김윤호 | 김현웅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 033-258-6580 |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KINPEX 2011 Korea Invention Patent Exhibition 2011

SIIF 2011 Seoul International Invention Fair 2011

2011 상표 · 디자인권 展
2011 Trademark · Design Right Exhibition

우수발명과 기술선진국 도약을 위한 신기술 발굴 시상
우수특허제품의 판호개척 및 우수특허기술의 사업과 촉진

# 2011년
#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 상표 · 디자인권 展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일시 2011.12.1(목) ~ 12.4(일), 10:00 ~ 17:00
장소 COEX 1층 Hall A (구 태평양홀)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발명진흥회

**프로그램**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 서울국제발명전 / 상표디자인권전 – 개막식 및 전시관 순시, 부대행사 등 진행
- 대한민국발명대전, 상표디자인권전 개막식 (통합 개최)
- 대한민국발명대전 시상식 (우수상표권 포함)
- 서울국제발명전 시상식
- 대한민국발명대전 구매상담회 및 만찬

IPAT

한국발명진흥회

제 3 회

# 지식재산능력시험

## IPAT 실시요강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발명진흥법상 법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지식재산능력 공인시험으로 기본지식과 실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 **접 수 시 간 :** 2011년 11월 1일(화)~11월22일(화)
- **제3회시험 :** 2011년 11월 26일(토)
- **대 상 :**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대상
- **응 시 료 :** 개인 : 20,000원 / 단체 : 18,000원(시험본부에 등록된 단체)
- **접 수 방 법 :** www.ipat.or.kr에서 신청
- **시 험 장 소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IP세상!
IPAT으로 준비하세요!

제3회시험
11월26일

##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 **표준교재 :**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 "지식재산의 정석"
- **온라인교육 :** 저자직강
  - e-ipat
- **오프라인교육 :** 종합정리 및 문제풀이반
  - 집체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문의 : 02)3459-2777,2888 * 자세한 사항은 www.ipat.or.kr에서 확인